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권순현



입법평가 연구 13-24-③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권 순 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Bill

연구자 : 권순현(초청연구원)

Kwon, Soon-Hyun

2013. 9.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요약문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 급증
- 금융소비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미흡

### 연구의 목적

- 수년 동안 준비되어 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실효성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 II.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함
- 금융상품,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금융상품을 그 속성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 설명의무 등 개별 금융법상에 마련된 판매행위관련 규제를 상품유형별 속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체계화하여 규정
- 금융회사와 대리·중개업자간에 사용자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으로 도입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를 강화
- 소송중지제도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 입법평가 주요 내용

- 체계성 평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입법목적, 규제체계와 규제내용, 개별법과의 관계등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음
- 사전적 보호제도로 영업행위 준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피해현황 및 사례들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됨
- 독립자문업자의 신설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문업의 도입에 판매와 자문의 부분적 허용과 독립자문업의 시장에서의 진입장벽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

- 선진국등의 경험에 비추어 금융소비자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비교공시 및 공적금융자문서비스의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사후적구제에서는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배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개선

-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처벌 규정 강화 등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사후적 구제 강화

####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방향 제시

- 약관심사, 금융상품 담합금지, 공공 금융자문서비스 등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및 금융옴부즈만 제도 도입

▶ 주제어 :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적 보호, 사후적 구제,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상품자문업, 금융감독체계

#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s

- Background and purposes
  - Increasing demand of stronge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financial company and financial consumer.

## II . Main Contents

- Main Contents of the Bill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Integrated law in the form of legislation, and a comprehensiv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contents of legislation.
  - Solve the problem of regulatory absence or regulatory arbitrage.
  - Ex-ante and ex-post measures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with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protection board.
  - The same function-same regulation policy introduced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 General principles on selling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suitability rule and explanation duty, etc.


## Main Issues on Legislative Evaluation

- Because the applicable range of the Bill is narrow, it is necessary to extend its subject of application, and extend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 Independent consulting firm needed for the financial consumer to choose reasonable financial products.
- Liability of proof should be on the side of sell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cooling off system needed for a careful decision and a rational choice of financial consumers.
- Independent consumer protection board needed for effectiv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III. Expected Effects**

### Pave the Road for Effectiv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 Review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the Bill.
-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Key Words**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nte and ex-post protective measures, Fair sales practices,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입법평가의 목적 .....	13
제 2 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	15
제 2 장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및 목적 .....	17
제 1 절 금융소비자의 개념 .....	17
제 2 절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19
제 3 절 해외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	22
1. 미 국 .....	23
2. 영 국 .....	26
3. 캐나다 .....	28
4. 호 주 .....	30
5. 일 본 .....	32
제 3 장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및 추이 .....	37
제 1 절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추이 .....	37
제 2 절 불완전판매 유형과 현황 .....	40
1. 계약서 교부 위반 .....	41
2. 설명의무 위반 .....	42

3. 적합성원칙 위반 .....	44
4. 부당권유 .....	45
제 3 절 발생 원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	46
1. 정보의 비대칭성 .....	47
2. 불공정한 약관 .....	49
3. 금융사 불공정 거래(담합) .....	51
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	55
제 1 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	55
1. 정부제출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	56
2. 의원안의 주요내용 .....	71
제 2 절 체계성 평가 .....	74
1. 입법목적 .....	74
2. 적용 범위 .....	76
3. 규제 체계와 규제 내용 .....	79
4. 개별법과의 관계 .....	82
제 3 절 사전적 보호제도의 효과성 평가 .....	87
1. 판매행위 규제 .....	87
2.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93
3. 금융소비자 교육과 비교공시 .....	97
제 4 절 사후적 구제제도의 효과성 평가 .....	100
1. 손해배상 .....	100
2. 소송중지제도 .....	101
3. 입증책임 .....	102

4. 징벌적 손해배상 .....	104
5. 집단소송제 .....	105
제 5 절 소 결 .....	108
제 5 장 바람직한 입법방향 및 결론 .....	111
제 1 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	111
1. 사전적 보호 이전 단계 .....	113
2. 소비자 보호 관련법 재정립 .....	114
3. 공적 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	116
제 2 절 결 론 .....	117
참 고 문 헌 .....	119
<b>【부 록】</b>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안 .....	12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입법평가의 목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정책이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발전하였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최근 10년 동안 금융부문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등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매우 미약하다. 가계의 금융자산은 소득 대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노령화에 따라 개인들을 위한 금융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금융거래의 중요성과 금융시장에서 가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법률체계, 감독 및 규제 등 모든 점이 미비하다. 더욱이 최근의 금융부분의 변화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켜 금융소비자피해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금융상품이 펀드와 투자상품 등으로 확대되고 파생상품 등의 결합으로 금융상품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정확한 이해와 정보 없이 금융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 등의 상품은 장기의 계약기간을 갖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sup>1)</sup>

---

1) 원승연,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금융소비자보호: 현안과 정책과제, 2009년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 6면.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특히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비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구입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고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설령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때때로 상품의 효과를 단기간에 알기 어려워서 그 부작용을 인식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적시에 소비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취하기 어렵다. 최근 변화한 금융환경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들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금융상품에 내재한 위험과 보상의 수준을 이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 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미흡하였다.<sup>2)</sup>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이러한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정보나 거래환경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금융기관과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주고 대출 및 금융상품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흐름을 안정시켜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금융법들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보호법률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자본시장법의 각종 소비자보호규제들을 은행, 보험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영역에 확대하려는 것이다.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있으

---

2) 이경주,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평가”, 금융소비자연구, 제1권 제1호, 2011.

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및 금융업종과 금융상품 기능에 따른 규제형태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sup>4)</sup>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및 연구들을 정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률안 등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법안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이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현황 사례 등을 통해 수년 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소비자보호법안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금융소비자의 보호체계의 수립은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로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전적 입법평가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발의한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안 있으므로 병행적 입법평가의 성격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적인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피해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세 기관에서 접

3) 정부제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012년 2월 2일에 처음 제안되었고 2012년 7월에 다시 제안되었다.

4) 정운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이슈 분석',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4 No.1, 자본시장연구원, 2012. 28-29면.

수된 금융소비자 민원을 통해 금융소비자피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도출하려고 한다.

4장에서는 기존에 국회와 정부에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특징들을 분석하고 최근의 금융소비자피해 혹은 금융소비자 분쟁 등의 자료를 토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고자 한다. 입법평가의 방법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체계성 분석과 사전적 보호제도 및 사후적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소비자보호와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민간과 정부, 그리고 거시 금융감독 체계와도 연관된 정부조직과 관련된 논의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중점적인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제 2 장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및 목적

### 제 1 절 금융소비자의 개념

소비자기본법<sup>5)</sup>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이용하는 자로서 공급자에 대립한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의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지위의 소비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재의 구입자는 물론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구입자인 보험계약자, 일반 투자자 등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도 포함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자에 대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예금자(은행법 제1조), 투자자(자본시장법 제1조), 보험계약자(보험업법 제1조), 카드사용자(여신전문금융업 제2조)등을 가리킨다. 예금자는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수신취급기관에서 예금 및 적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투자자는 증권투자자와 펀드 및 장외상품 투자자 등이 있는데 증권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는 사람이다.

전통적으로 투자자는 소비자와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주식이나 채권 매입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금융소비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금융자산의 매입자로서 투자자는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시장의 위험을 같이 보유하게 되며 일단 매입하게 되면 위험 전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6)</sup>

5)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6) 성승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30면.



금융소비자의 범주는 전문적인 지식의 여부, 거래금융상품의 유형, 거래상대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대상으로서의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정보와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주체를 지칭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정보와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도 소비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범주에 증권시장에서의 비전문적 투자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금융소비자는 예금, 대출, 보험등과 같은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에 한정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비전문적인 투자자들도 금융소비자라 할 수 있다.<sup>7)</sup> 금융선진국들은 금융규제의 중심목적을 소비자보호로 보고 이를 금융규제법에 명시하는 경향이 있다.<sup>8)</sup> 따라서 실제로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기관투자자 등의 전문투가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금융기관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자만 포함할 것인지, 전매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보유자를 최종소비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전환 기준 등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비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방향을 모색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정의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는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금융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의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며 “은행의 예금자,

7) 황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보호*,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 2010, 7면.

8)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은 금융규제의 목적을 금융소비자의 보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자 등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sup>9)</sup> 금융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개념을 사용한다.

## 제 2 절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금융산업의 겸업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 발달로 각종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다가 G20정상회의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채택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적 감독 정책과제로 채택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펀드, 통화옵션상품(KIKO), 추가연계증권(ELS),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규제 등 사전적 보호제도와 관련한 개별 금융업권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은행법을 비롯한 개별 금융권역별로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

---

9) 금융감독원, 2010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8면.

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 내에서 설명의무, 적합성 의무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영업행위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가 계속되고,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라 한다)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로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별 금융업권법에 의해 부수적인 사항으로 규율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 금융교육, 정보제공,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도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및 교육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개별 업권별로 적용되면서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일부 업권에 대해서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sup>10)</sup>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분쟁조정제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나

10) 규제차익의 사례로는 은행이 취급하는 ELD(추가연동예금)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나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이라는 이유로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없고, 부당광고의 경우 벌금이 은행은 3천만원 이하(은행법 제68조제2항), 금융투자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자본시장법 제446조제8호, 449조 제1항제25조의2호),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20%이하의 과징금(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제209조) 등 동일한 규제 위반시에도 업권별로 제재수준이 상이하다. 또한 규제공백의 사례로는 저축은행 등이 후순위채를 직접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의 규제적용이 배제되고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연계한 상조예금, 상조적금, 상조보험의 경우 상조회사의 도산에 등에 따른 서비스 지급제한 사유, 책임소재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금융소비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적 제재수단도 미흡하다. 이러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기본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하여 금융거래가 활발해지고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 및 거래를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과도한 자금흐름이 유발되었고 그 결과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이 확산되었던 것이다.<sup>11)</sup> 이러한 관점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를 대립적인 주체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생하는 관계라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금융거래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1) 원승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기 정책 심포지엄, 2009, 7면.

개별업법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상품거래시의 규제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업법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통합하여 횡단적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넷째, 판매가 적정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섯째, 판매와 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여섯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일곱째, 금융상품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덟째, 금융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요구된다.<sup>12)</sup> 현재의 개별금융법령에서는 금융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달리, 외부판매채널에 대한 제재규정은 미흡하며 또한 금융업건별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실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실제적이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법제들을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절에서는 해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제 3 절 해외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선진 각국은 감독체계개편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금융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지적되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

12) 정대근,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2권 제1호, 2011.2, 111면.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여 미국과 영국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규제 및 감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또는 대리인 및 이들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줄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는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 감독 및 규제 당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구 또는 자율규제 조직, 그리고 기타 하부구조 등을 그 구성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법률 체계는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의 감독 및 규제 당국이 그 업무를 실시한다. 또한, ombudsman과 같은 공적인 조직은 금융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보다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금융 교육을 위한 제도 및 담당 기관을 설립하여 그 하부구조를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주요국의 소비자 보호체계이다.<sup>13)</sup>

## 1. 미 국

미국은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보다는 법률 체계에 의거한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가 발전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은 포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의 형태로 다수 제정되었다. 대부행위와 관련된 대부진실(Truth in Lending Act, 1968)과 공정채무 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13) 이기중,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666-671면.

Act, 1977), 그리고 저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규제하는 진실저축법(Truth in Saving Act, 1991),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1970) 등이 있다.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은 신용비용을 포함한 신용조건의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용조건들을 좀 더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정보 없이 신용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신용계산과 신용카드 관행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개혁 이전에 미국의 예금취급기관은 FRB 등 연방감독기관들과<sup>14)</sup> 주정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았으나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는 감독의 공백이 있었다. 금융감독이 예금취급기관에 집중됨에 따라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투자은행, 헤지펀드, 보험회사 등의 금융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금융투자에 나선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였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금융개혁법을 마련했다. 2009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 불리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제안을 기초로 상원과 하원의 법안을 통합하여 2010년 7월 법안이 마련되었다.<sup>15)</sup>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 대마불사의 성격의 구제금융 방지, (3) 조기경보시스템, (4)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

14) 연방감독기관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전국신용조합연합회(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등이다.

15) 하원에 제출된 법안 이름은 “The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9”였으며 상원의 경우는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이었다.

와 규제 강화, (5) 경영진 보수와 지배구조 개선, (6)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 등이다.

도드-프랭크법과 함께 신설된 기구로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와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 있으며, OTS(Office of Thrift Supervision)는 폐지되었고, FRB와 FDIC의 역할을 일부 재조정하였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험을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및 업무협조를 위한 총괄기능을 하는 등 거시금융감독이 주요 업무로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FRB 내에 설립하나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은 미 연준시스템(Federal Reserve System)에서 부담하나 이 또한 독립적으로 집행한다. SLWG(2009)<sup>16)</sup>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할 경우 오히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이외 별도의 조직이 여러 감독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소비자민원, 금융지식 제공을 위한 금융교육등을 담당한다. 대상기관은 예금취급기관뿐 아니라 소매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서 주택관련 대출금융기관도 해당된다. 그러나 SEC, 연방보험국, 주별 증권감독기관, 주별 보험감독기관등이 규제하는 보험과 펀드상품은 CFP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sup>17)</sup>

16) Squam Lake Working Group on Financial Regulation “A Systemic Regulator for Financial Marke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May 2009.

17) 성태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경제의 분석 제 18권 제1호, 2012, 5~8면.



이밖에 금융위기 이후 개혁입법들이 있었는데 대부진실법의 시행령인 “Regulation Z”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FRB는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영업관행 개선 및 공시 강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Regulation Z의 개정내용과 유사한 신용카드개혁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을 2009년에 제정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완하였는데 모든 대부자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였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선납부담금(pre-payment penalty)을 금지했다. 또한 이자를 낮추거나 높은 이자를 적용 할 수 있게 만드는 신용포인트 및 수수료 체계를 규제함으로써 고비용의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대부자는 가변이자율 적용시 소비자가 최대 부담 금액을 명시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지불비용 변동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다.<sup>18)</sup>

## 2. 영 국

영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의 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단일기구에서 통합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규제 감독체계가 투자자보호 및 금융감독에 미흡하여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FSMA)이 제정되었고<sup>19)</sup>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이 수행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2009년 은행법(Banking Act 2009) 개정을 통해 금융 감독체제를 강화하였다. 은행법과 더불어 금융시장 개혁안이 2009년 7월에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18) 성태운(2012), 18~20면.

19) 동법은 기존의 은행법, 보험회사법, 금융서비스법 등을 통합한 것이다.

록 감독기관들<sup>20)</sup>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 감독기관 간의 공조를 이전보다 공고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체계적 위험에 대해 감독기관의 협조 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들의 공조를 위하여 금융안정회의(Council of Financial Stability)를 설치하였는데 금융안정위원회는 재무성의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성, 영란은행, FSA가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둘째로, 감독기관에 특별정리조치(Special Resolution Regime, SRR)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정리조치는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가 부실은행에 대한 판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신고를 받은 부실은행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별정리조치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며, 예금자와 공적 자금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정리조치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보상설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가 강화되었다. FSCS는 예금 혹은 투자 대상의 금융회사가 부도위험에 처한 경우, 부도위험에 처한 금융회사에 속한 예금을 옮길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금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원인 FSA는 2012년 건전성 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과 금융규제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으로 분리된다. 이는 기존의 감독기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독구조로써 이중 감독구조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예금취급은행, 보험회

20) 재무성(HM Treasury),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 Authority)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성태윤(2012), 21면.

사 및 주요 투자회사와 같이 금융시스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들에 대하여서는, 건전성 감독은 PRA가 규제 감독은 FCA가 각각 나누어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 그 외의 규제 대상 기업은 FCA가 건전성감독 및 규제감독을 담당함으로써, 기존의 금융 감독의 공백 및 미비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sup>21)</sup>

영국의 금융감독체제가 변화한 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선 금융기관 파산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였다. 금융감독 보상설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가대부기금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미래의 필요에 대비하여 기금조성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둘째, 금융소비자 민원처리 및 교육을 강화하였다. 소비자 신용보호법과 FSMA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금융 옴부즈만(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신고된 분쟁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 옴부즈만의 결정은 금융기관에게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소비자교육을 담당할 금융자문서비스를 신설하여 올바른 투자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모기지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전성 감독과 함께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Loan to Value)상한선과 소득에 대한 대출 상한선을 규제하였다.<sup>22)</sup>

### 3. 캐나다

캐나다는 2000년 이전에는 보험은 주정부에서, 증권규제는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보호관련 법규가 산재되었으나, 2001년 금융

21) HM Treasury, "Reforming Financial Markets", July 2009.

22) 영국에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금융고충처리기구인 금융옴부즈만제도는 매년 100,000건 이상의 논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태윤(2012), 17, 21면.

소비자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CAC)을 신설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규율하는 입법체계를 마련하였다. FCAC는 금융감독청, 예금보험공사, CBO(Canadian Banking Ombudsman)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이것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입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금융업법에 소비자보호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는 크게 「은행법」, 「보험회사법」, 「신탁 및 여신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4개업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업법별로 공시 및 광고, 대출비용, 불만처리 절차 등 소비자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에서는 금융소비자청의 설립과 권한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업권별 소비자 규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sup>23)</sup>

캐나다는 연방금융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OSFI)이 은행과 보험의 감독을 통합하고 감독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청(FCAC)을 설립하여 소비자 보호와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과 미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캐나다의 감독 체계는 OSFI가 은행과 보험을 감독하고 있으나, 증권 부문에 대한 연방 감독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주정부가 관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감독 부문의 분할은 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FCAC가 은행과 보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나, 증권 부문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24)</sup>

FCAC는 연방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전담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전적 감독업무로는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자율규제시스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교육

23) 오영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1, 60면.

24) 원승연(2009), 15면.

관련업무는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을 위한 연간보고서를 출간하고 홈페이지에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의 분쟁조정중재와 관련한 감독기구로 FCAC가 아닌 별도의 기구인 통합옴부즈맨(The Financial Services Ombuds Network)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기관 내부의 불만처리 절차를 거친 후 소관 옴부즈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옴부즈만은 세 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다. OBSI(Ombudsman of Banking Services and Investments)는 은행과 신탁분야를, CLHIO(The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Ombuds-service)는 생명보험과 의료보험 분야를, GIO(The General Insurance Ombuds-service)는 주택, 자동차 및 비즈니스 관련 보험 분야를 각각 전담하여 소비자를 상담하고 있다. 옴부즈맨의 지배구조는 업계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 및 구성방법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5)</sup>

#### 4. 호 주

호주는 2001년 「금융서비스 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제정을 통해 「회사법」, 「연금산업법」, 「퇴직저축법」 등에 나뉘어 있던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통합하였다. FSRA는 금융업종별 규제체계의 통합보다는 금융시장의 영업행위 및 공시기능 등에 대한 통합을 중시하였으며 인허가 절차 및 기준 등과 같은 부분적인 업종별 규제체계의 통합을 실시하였다. FSR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및 공시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은행법」, 「보험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개별법에 의한 금융소비자 규정으로는 공통적

---

25) 오영수외(2011), 61-62면.

으로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규정이 들어있다.<sup>26)</sup>

호주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쌍봉형 감독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이다.<sup>27)</sup> 금융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에서 예금, 보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기구를 분산하고 있다.

ASIC는 2002년 FSRA(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의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된 기관을 설립한 목적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기관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규제 받는 것을 제거하고, 소비자들 역시 일관적이지 않은 법규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년 들어와서 ASIC는 금융교육재단의 금융교육 기능까지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그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FSRA는 공시체제를 강화하여 금융상품의 판매부터 소멸까지 소비자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문업을 인가제로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민원업무를 금융권역별로 독립된 외부 분쟁해결기구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계속 통합되어서 ASIC에 의해 승인된 금융옴부즈만(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와 신용옴부즈만(Credit Ombudsman Service Ltd., COSL)와 함께 법정기구인 기업연금분쟁심판위원회(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SCT)가 활동하고 있다. FOS는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 권역별 분쟁해결기구를 통합한 것으로, 은행, 신용조합, 주택금융조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업연금, 재무설계, 생명보험 중개사, 주식거래, 투자 등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분쟁을 해

26) 오영수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1, 44-46면.

27) 쌍봉형 감독체제는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이 목적상 상충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SL은 신용조합 및 주택금융조합, 신용서비스공급자, 재무설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SCT는 기업연금공급자 등의 의사결정 및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정부기구이다.

호주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계약상 불공정 조건을 다루기 위해 「국가불공정계약조건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ASIC는 새로운 강행규정과 소비자배상권을 갖게 되었다.<sup>28)</sup>

## 5. 일 본

일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은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이 있으며 이 외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개별 사업법에서 권역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거래를 포함한 모든 상품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의 기본법에 해당하며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소비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총론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소비지향적인 정책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확산되었으나 법류의 미비 등으로 고배당 권유 및 불법 할부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통합금융법의 제정을 부분적이고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통합금융법 추진의 제1단계로 2000년에 「금융상품판매법」이 제정되고 제2단계로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금융상품판매법」의 공통영업행위를 준영하기 위해 2006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었다.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의 판매권유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재판에 의한 구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

28) 오영수외(2011), 48-50면.

명확히 하고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을 상이한 법적 근거 또는 근거의 부재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판매자에게 권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침의 마련 및 공표를 의무화 하는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최초의 통합금융법이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sup>29)</sup>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의무위반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sup>30)</sup> 적합성원칙 관련하여서는 금융상품거래법제정 이후 판례는 설명의무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업으로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해 권유를 하는 때에는 그 적정성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하여 적법한 투자권유의 의무를 제시하고 부당한 투자권유를 명시하여 그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제공 관련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계약취소를 인정한 소비자계약법을 2000년에 제정하였다.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을 하여 금융상품계약을 하였을 경우 취소권을 부여하였다.<sup>31)</sup>

일본은 금융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을 행하고 있으며 2009년 소비자청을 신설하였다. 금융청의 기능은 금융기능의 안

29) 오영수외(2011), 66면.

30) 황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한 판매와 소비자 보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10, 99-101면.

31)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은 사기의 확장으로서의 ‘오인’에 의한 취소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를 할 때 소비자가 불응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곤혹스러움에 빠져 소비자계약을 승낙했을 때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황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0, 101면.



## 제 2 장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및 목적

정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험계약자, 유가증권투자자 등을 보호하여 금융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건전성규제와 영업협행위규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소비자보호기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청은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계약법 등 제반 법률의 제정을 기획하고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자문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표 1> 주요국의 소비자보호 체계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감독 기관	조직 형태	기능별	분리형	분리형	분리형	통합형
	담당 기관	CFPB (FRB내)	FCA PRA	FCAC	ASIC	금융청
법률 체계	입안 형태	통합법	통합형	개별법	통합법	개별법
	주요 법안	도드 프랭크법 (2010)	FSMA(2000)	은행법, 보험회사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FSRA(2001)	금융상품 판매법 소비자계약법 등
민원 및 분쟁 조정기구		CFPB	금융음부즈만 (FOS)	3개의 음부즈만 제도 : OBSI(은행 및 신탁), CLHIO(생보, 의보) GIO(주택, 자동차 보험 등)	금융음부즈만 신용음부즈만 SCT	소비자청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Office of Financial Literacy	FSA	FCAC	ASIC	소비자청

약어설명: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FCAC(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FA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FSRA(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 SCT(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 제 3 장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및 추이

### 제 1 절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추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및 금융소비자 피해 추이를 보면 2012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77,132건이며 2013년 상반기에는 42,582건으로 2012년에는 2011년대비 민원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1%가 증가하였다. 금융상담은 2012년 397,446건으로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권역별로 2012년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부문은 4.8만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고 은행/비은행부분은 4.3만건으로 전년대비 7.0% 증가율을 보인 반면 금융투자부분은 3천5백건으로 전년대비 10.2% 감소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가장 많이 증가한 보험부문은 보험사들의 모집인 확대 등을 통한 공격적인 외형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보험요율 부당적용,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보험료 환급 기피 등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였고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의 전화마케팅, 인터넷판매 등의 불완전판매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보험사기 증가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및 심사의 지연, 복잡한 지급절차 및 지연 등이 민원도 다수 발생하였다.

금융투자부분은 건수로 볼 때 전체 금융민원의 3.7%만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민원 내용은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일임매매 또는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등 주식 매매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부분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비은행 부분은 경기둔화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 및 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법·부당

한 채권추심관련 민원이 급증하였고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회사가 대출 연장시 부당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였거나,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다른 금리를 적용하였거나, 사전고지 없이 금리를 인상하였다는 내용 등 대출금리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에 대응하여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데 대한 불만과 연회비 부당청구 및 사용한도 축소 등에 대한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금융감독원 유형별 금융 상담 및 민원 추이

(단위: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6
금융상담	300,406	308,520	383,108	397,446	192,701
은행/비은행	103,984	98,812	122,435	117,032	56,928
보험	95,176	92,523	107,452	112,557	57,213
증권자산운용	10,641	8,827	11,163	10,966	4,875
기 타*	90,605	108,358	142,058	156,891	73,685
민원 (분쟁민원)	76,826 (29,988)	72,169 (25,888)	84,731 (33,453)	77,132 (28,740)	42,582 (15,512)
은행/비은행	31,236	27,760	39,998	35,425	19,274
보험	40,936	40,334	40,801	39,005	21,231
증권자산운용	4,654	4,075	3,932	2,702	2,077
총 계	377,232	380,689	467,839	474,578	235,283

\*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 타기관 관할 상담, 전화사기신고 등  
자료: 금융감독원

2012년 중 최대발생민원영역은 보험영역이었다. 보험모집이 13,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23.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1만 3천으로서 보험모집과 건수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전년대비 44.8%가 증가하여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모집과 보

협금 산정 분야의 민원은 26,493건으로 전체 민원건수의 34%를 차지하였다. 2013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은 전체의 민원의 50.6%를 차지하여 보험관련 민원이 금융소비자 피해 중 가장 피해건수가 큰 영역임을 알 수 있다.

&lt;표 3&gt; 2012년 중 최대발생 민원유형

(단위: 건, %)

순 위	민원 유형	권 역	민원건수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①	보험모집	보 험	13,493	2,607	23.9
②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 험	13,000	4,023	44.8
③	여 신	은행 · 비은행	10,775	1,999	22.8
④	신용카드	은행 · 비은행	8,585	1,666	24.1
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은행 · 비은행	5,400	△467	△8.0
⑥	면 · 부채 결정	보 험	3,924	△262	△6.3
⑦	계약의 성립 및 실효	보 험	3,862	740	23.7
⑧	신용정보	은행 · 비은행	2,859	△680	△19.2
⑨	예 · 적금	은행 · 비은행	2,015	△81	△3.9
⑩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보 험	1,819	△412	△18.5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은 2003년에는 1,859건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7,97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보험 민원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의 하나는 인식시차로 인한 것이다. 모집 또는 유지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실제로 보험가입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령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었을 때 보험

사가 보험 계약상의 조항을 지적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 또한 보험 계약이 중간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기도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분장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사전에 보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의 대상이 된다.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추이를 보면 보험분야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단순한 상담에 머물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 제 2 절 불완전판매 유형과 현황<sup>32)</sup>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유형은 i) 계약서 교부 위반, ii) 부실고지, iii)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vi) 단정적 판단의 제공, v) 적합성원칙 위반, vi) 불초청권유로 “정보제공의무”와 “부당권유행위”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거나 다르게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 부실표시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확정한다면, 소비자원 사례 유형으로 계약서 교부 위반, 부실고지,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단정적 판단의 제공을 들 수 있다. 한편, 부당권유행위는 금융업법에 부작위의무로 규정된 것으로 단정적 판단의 제공, 적합성원칙 위반, 불초청권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완전판매는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하고,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식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불완전판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황진자, 불완전판매 현황과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금융소비자불만실태와 법적과제*,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8.12. II. 불완전판매 현황(44-52면)을 발췌 편집한 것이다.

## 1. 계약서 교부 위반

금융계약은 무형의 상품이어서 금융의 보장내용 등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가 교부받는 것은 계약에서 중요하다. 계약서 미교부 관련 소비자불만은 금융상품판매자가 계약자 등의 동의(서명)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sup>33)</sup> 전화권유판매 등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 녹취가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금융상품 구매의사도 명확하지 않고, 계약서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내면의사와 달리 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 점을 들 수 있다.<sup>34)</sup>

“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대부분이 계약서를 받지 못해, 보험가입을 한 사실을 몰라 보험 청약철회나 취소 기간을 지나친 예도 있고<sup>35)</sup>, 보험설계사가 약관과 다른 설명을 하여도 계약 당시에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취소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서명없이 펀드에 가입된 경우: 신청인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에게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가입시켜달라고 의뢰하였더니, 담당직원은 2007년 11월에 임의로 펀드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펀드상품의 가입사실을 몰랐고 서명하지 않았으며 상품의 위험성, 원금손실여부 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인데, 당해 펀드는 당시 50%의 손실을 보았다.

34) 서명(동의) 없이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2004년 12월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아 가입유지 중 2007년 3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문의하니 가입 보험이외에도 신청인의 동의없이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자동이체계좌로 보험료가 인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보험회사에 가입사실 없음을 알린 후 가입시 녹취를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녹취사실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35) 계약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취소기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는 2006. 3.27. 운전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가 와 카드 고객들의 건강체크를 한다며 신청인의 건강상태 문의 후 보험가입을 권유해, 운전 중이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 네하고 답변을 하다가, 추후 보험청약서를 보내주면 확인하고 가입여부 결정을 한다고 했으나 보내오지 않았다. 신청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는데, 2006년 8월 신청인의 카드로 보험료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2006년 10월경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한편, 이를 방지하고자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필서명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금융사업자가 설명하지 않거나 다르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필확인서가 금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 2. 설명의무 위반

### (1) 부실고지

“부실고지”는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사항은 금융거래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이 되는 내용과 소비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한다. 보험상품의 경우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받을 불이익,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 등을 들 수 있고<sup>36)</sup>, 투자성 상품의 경우 상품구조, 투자위험,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조기상환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은 진실 또는 진정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은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고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결론을 내린다.

대표적으로 투자의 유리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친 설명을 하다 보니 펀드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sup>37)</sup>, 보험계약당시 추후 연금

36) 양승규,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저스티스』, 1996.9월호, 137면.

37) 3년 만기가 되면 원금보장이 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 피해자는 2006.5.8. 대구은행에서 투스타라는 펀드에 가입하였다. 투스타 펀드는 만기 기간이 6개월 단위



으로 전환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 전환이 안 되는 경우<sup>38)</sup>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2)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불이익사실의 불고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익이 된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반대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적극적으로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된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반대로 불이익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불이익사실의 불고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민원이 주로 접수되는데,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경우<sup>39)</sup>, 파산 등의 위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sup>40)</sup>, 환차손에 대한 추가비용에

---

로 3년 만기인 상품인데 원금은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을 하였다. 그런데 2008년 10월 증순경에 주가가 너무 떨어져 현대차가 4만 원대로 내려와서 만기가 되어도 현대차가 82,000원대가 안 되면 원금손실이 된다고 통보를 하였다.

38) 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전환 안 되는 경우: 피해자는 2007.6.29. 직장상사의 소개로 피신청인인 설계사와 무배상보험 상품을 구입하면서 신청인의 모(母)를 계약자로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설계사가 향후 연금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최근 이 보험상품은 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39) 원금이 손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모친(73세)은 2006.12.10. OO은행에서 1억3천만 원 펀드를 가입하여 유지 중 8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신청인의 모친은 글을 모르고, 눈도 백내장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가입 요구를 하니 판매직원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전혀 하지 않은 채 펀드를 예금으로 오인시켜 가입을 하게 하였다.

40) 약관은 받았으나 파산 등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2007.2.27. OO은행에서 OO투스타 투이월 16-1호 펀드상품을 가입하면서 4,000만원을 예치하였는데, 얼마 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동 상품이 80%로 감가되고 환매가 중단되었다.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니, 약관상에 ‘파산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동 상품 가입당시, 상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례의 특징은 계약 당시 불이익한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하였다면 펀드가입을 하지 않을 것을, 불이익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펀드가입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뒤늦게 원금이 손실되어 손해를 입었음을 알고 계약의 취소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주장한 내용이 약관 및 청약서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거나 중요 내용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적합성원칙 위반

적합성원칙은 판매업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거래목적과 상황 등 해당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으로 ‘Know your customer rule’ 또는 ‘stability rule’이라고 한다.

적합성 원칙은 현재 투자성 상품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펀드의 경우, i) 펀드 판매사가 펀드 구매의 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에게 펀드 구매를 감언이설로 강권하여 결국 고객이 아무런 지식 없이 펀드를 구매한 경우, ii) 펀드의 경험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 또는 퇴직한 가장, 고령의 노인으로서 평생 풍돈을 모아 만든 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자녀학자금, 주택마련, 노후대비 등을 위해 펀드를 구매하는 것인데도 이러한 고객에게 고위험이 수반되는 펀드를 권유하여 판매한 경우, iii) 펀드를 구입하는 자금이 고객의 전 재산 또는 많은 용자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금 손실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펀드 상품을 권유하여 구매하게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한시적 운동선수인데 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부 하는 상품을 권유하거나<sup>41)</sup> 경제적 여건은 월 80만 원씩 받는데 변액보험료로 월 160만원씩 권유하는<sup>42)</sup> 등 소비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수당 등에 치우쳐서 보험을 가입시킨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 4. 부당권유

##### (1) 단정적 판단의 제공

“단정적 판단의 제공”은 장래에 있어 불확실한 변동 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원래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연 4.5% 수익률 보장’, ‘국고채 금리보다 1.2% 높은 확정금리 보장’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41) 월 150만원 운동선수에게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입 상품 권유: 피해자는 운동선수이고 월급은 150만 원 받는 정도이고 선수생활은 5~6년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신청인에게 2006.6.11. 18개월만 납부하면 해약을 해도 월금보장이 되며, 3년 이후 수익이 25% 발생되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여 그 말을 믿고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지금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고 해약을 하려고 하니 10년간 납부하는 변액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었다. 신청인은 운동선수여서 선수 생명도 짧고, 월급도 150만원 정도여서 경제적 능력이 여유롭지 않는데, 보험모집인이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부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42) 한 달 80만원 받는 사람에게 월 보험료 160만원 상품 권유: 피해자의 아버지는 월 80만원씩 받는 월급생활자인데 보험설계사가 재정설계에 따라 월 160만원씩 평생 보험료를 납입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하였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2년만 납입하면 보험금을 받는 줄 알고 계약서에 사인하였다.

43) 4.5% 수익률을 보장: 신청인은 1년 전 OO은행에서 4.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따라 MMF펀드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현재 수익률이 3%로 최초 약정과 다르다. 위험도에 대한 설명 없이 국고채금리보다 1.2% 높은 확정금리를 준다고 광고를 해서 우리 Power Income 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에 가입하였다. 은행

## (2) 불초청권유 등

부당권유의 한 형태로서 “불초청권유”(unsolicited call)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를 들 수 있다. 불초청권유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판매권유를 말한다.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란 판매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초청권유의 경우 보호법익이 사생활보호라고 해석하는 견해<sup>44)</sup>도 있지만 원치 않는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자기 결정을 적절하게 행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불초청권유의 상품은 “장외파생상품”에만 적용하고,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흔히 직장으로 방문하여 금융상품의 판매를 권유하거나 무작위적인 전화통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판매행위에 익숙하고, 규제가 거의 없다 보니, 불초청권유 등으로 피해를 당하여도 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해 이에 대한 피해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제 3 절 발생 원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sup>45)</sup>

금융소비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불만족의 근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불공정한 약관, 금융사의 불공정한 거래,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 금융감독당국의 업계 편향적 정

---

창구 직원은 안전하다고 하였으나 결국 원금손실이 50%정도 발생하였다.

44) 변제호 외 4인 공저,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2009, 209면.

45) 조연행, “금융소비자 불만의 원인과 해결방안”, *금융소비자불만실태와 법적과제*,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8. 14. II.금융소비자문제 발생의 원인(10-26면)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책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 된다. 문제 발생의 원인을 금융소비자 문제의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본다.

### 1.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공급자들은 전문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금융사들도 불리한 내용은 숨기거나 감추고, 장점은 크게 과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백수보험, 변액보험, KIKO 상품,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이다.

생명보험사의 백수보험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백수보험은 시중금리가 20%이상 고금리이던 1980년 2월 5일부터 1982년 7월 19일까지 6개 생명보험사 [동방(삼성), 대한교육(교보), 대한, 동해(금호), 흥국, 제일(알리안츠)]에서 판매해온 상품으로 1년 만기 정기적금최고이율과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정기적금최고이율로 분리시켜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광고와 함께 지급예시표 위주로 이 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자 당초 예시표와는 달리 확정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온 상품이다.<sup>46)</sup> 백수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와의 수 없는 민원과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 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소극적인 해결의 노력에 그쳐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공동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금융사의 손을 들어줘 금융소비자 권익이 사라진 사례이다. 백수보험의 주요쟁점은 한마디로 확정배당금의 지급 여부이다.

보험사가 제시한 안내장, 조건표, 약관, 청약서, 증권 그 어느 것을 보아도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이 없는 상태

46)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2004.5.19), 백수보험피해자확정배당금지급촉구 시위 중, 발췌인용.

에서 보험가입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급예시표에 연간 약 1,500만원~3,000만원 지급이라고 예시하고, 작은 글씨로 ‘정기적금최고 이율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써놓고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설명의무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다. 상품에 대한 정보의 공개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이익단체인 금융사들의 협회에 두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의 상품공시제도의 경우 보험업계의 상품공시위원회는 사업자 이익단체인 보험협회가 관장하고 공시위원 대부분이 보험사 직원으로 공시 기준도 부풀리거나 숨겨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가 어렵다.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생명보험협회 산하에 설치된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상품과 관련이 없는 홍보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감독원계리실장, 보험개발원 실장, 생명보험사 임원 3명으로 9명중 6명이 업계관계자이고, 나머지는 3명은 변호사, 소비자교육원, 교수로 구성을 맞추었을 뿐 업계 마음대로 ‘공시 기준’을 세우고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보험회도 상품과 관련이 없는 홍보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감독원계리실장, 보험개발원 팀장, 손해보험사 계리사와 임원으로 9명 중 6명이 업계관계자이고, 나머지는 3명은 변호사, YMCA, 교수로 구성된다. 상품공시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사업비를 ‘납입보험료의 몇 %’라고 명시하면 되는데, 이를 숨겨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해 만들어 소비자가 납입하는 사업비금액을 알기 어렵다. 표준순보험료 대비 백분율(%) ‘보험료 지수’의 산출방식을 보면 소비자들은 잘 알 수 없게 되어있다.<sup>47)</sup> 공시위원회는 그나마 ‘보험료지수’ 마저도 종이 약관 앞의 ‘상

47) 생명보험상품비교·공시정보작성지침: 보험료지수 :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 (감독원이 정하는 위험율 및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품요약서'에 공개되던 것을 빼고,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힘겹게 찾아야만 겨우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각 보험사 대부분은 경비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종이로 된 약관을 없애고, CD로 모든 상품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종이로 된 약관을 받아 보기가 어렵고 종이 약관이 아예 없는 상품도 다수이다. 더욱이 자기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약관은 사전에 볼 수 없다. 또한, 생명보험사들이 상품에 부가하여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예정사업비 총액을 알 수 있는 상품별, 회사별 합계를 알 수 없도록 아예 통계를 빼버려, 얼마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공시하지 않고 있다.<sup>48)</sup>

## 2. 불공정한 약관

금융상품약관은 어렵고 복잡하다. 대개 금융상품의 약관은 금융사가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사용한다. 특히 표준약관은 금융업계가 안을 만들어 주고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여 제정한다. 이때 소비자는 만들어지는 지도 모르고, 소비자 측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도 산업측면을 우선 고려하지 소비자권익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 약관 변경시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 의견을 내지 소비자는 의견을 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금융상품의 약관은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계약이면서도 금융사에게 유리한 갑을관계의 약관이 될 수밖에 없다.

---

에 대비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보험료지수 = 납입보험료 현가총액 / 표준순보험료 현가총액X100. 예) 삼성생명 VIP정기보험 주보험(순수보장형) 예시. 연간보험료 53,535원, 보험료지수 159.3%,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이다. 이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59.3%가 비싸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비는 간략히 53,535원 X 59.3% = 31,746원 정도로 정확히는 표준 순보험료를 알아야 한다.

48) 이는 매년 수조원씩 이익을 남겨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독식한다는 비난이 일자 통계를 관리하는 보험사가 회원사인 보험개발원이 이를 없애버렸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315호, 은행 'CD금리담합' 철저히 조사하라(2012.7.19.), 사업비 공개 참조.

자세히 금융사 약관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 금융사의 대출상품에서 근저당설정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물론 율년에도 365일치 이자를 부담시키는 사례는 많다.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보면 소비자에게 고압적, 일방적, 불편·부당한 독소조항이 많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4대 항목 16개조항의 개선을 금융당국에 요구한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11.9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약관 57개조항의 개선을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모든 금융회사,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약관으로 은행이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해 ‘갑’의 이익에 편중되어 있고, 은행에게 유리한 것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은행거래여신 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 요구 사항은 ‘이자율 불이익, 담보물 보충의 명확화, 기한이익상실의 개선, 상계권 행사 명확화 등 4대 항목 16개 조항으로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리, 신용등급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는 변경청구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요구권을 주자는 것’이다.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표준약관에 대한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조항들이 표준약관 곳곳에 숨어 있다. 금융거래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약관의 작성과 해석은 당연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함에 없도록 공평하게 개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결정, 담보물의 보충, 기한의 이익 그리고 상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금융사에게 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은행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약관을 통해 금융 소비자권익 보다는 영업이익 위주로 영업을 하였고, 금융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이나 구제를 신청하여도 금융사에



유리한 약관의 조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시혜적인 보상을 받거나 외면되었다.<sup>49)</sup>

### 3. 금융사 불공정 거래(담합)

우리나라 금융사업에 대한 진입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본력과 로비력이 있어야 진입이 허용된다. 그래서 금융산업은 대부분 그룹사나 대기업이 진입해서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과점체제는 담합의 유혹이 크다. 가격 경쟁보다는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은행의 CD금

49)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332호, 은행여신거래약관개선해야(2012.11.12.), 발췌 인용 [불공정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

① 이자율의 불이익 조항: 이자율 체계가 불투명하고, 금리 상승기의 이자율 변화나 신용평가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반영되나 반대인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년을 365일 단위로 보고 1일 단위로 이자,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는데 1년이 366일로 이루어진 윤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여 은행은 실질적으로 4년에 1번 꼴로 하루치의 이자를 부당하게 얻고 있다.

② 담보물 보충 명확화: 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저당목적물의 보충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라 담보물인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과 같이 저당물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대담보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실무상에서도 대출금액이 LTV규제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개선: 도달주의 원칙 적용: 가압류, 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통지의 ‘발송’(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가압류, 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도달하는 때가 아닌 ‘발송’된(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문이 도달되기 이전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킴으로써 발송된 명령보다 먼저 상계적상에 놓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한 경우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급박하게 과도한 채권회수를 통하여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또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이자를 1개월간 지체한 경우는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에는 정상 여신을 보고 있고, 통지 후 3영업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은행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다.

리담합, 증권사의 단기채권이율담합, 보험사의 예정이율담합, 변액보험 수수료, 보증이율담합 등 담합 사례들이 많다. 담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회사별로 수백억 원씩 내지만 전체 소비자피해규모는 몇 조 단위로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소비자피해가 엄청난 만큼 반대로 금융사 이익은 해당금액 만큼 이득을 볼 수는 것이다. 금융사가 담합으로 적발되면 소액의 과징금을 내면 해결되고, 담합함으로써 취한 이득은 이의 몇 수백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담합 적발에도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sup>50)</sup>

생보사들은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은 ① 예정이율의 담합으로 인한 순보험료의 인상이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된 부분과 ② 공시이율의 담합으로 인하여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자들이 과소계상된 준비금 및 보험금 그리고 해지환급금 부분이다.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금액은 17조원이 넘는다.<sup>51)</sup>

<표 4> 기준금리와 CD 금리 변동 추이

구 분	2011.01.01	2011.01.13	2011.03.10	2011.06.10	2012.07.12
기준금리	2.5	2.75	3.00	3.25	3.00
CD금리	2.8	2.97	3.39	3.46	3.25

자료: 한국은행

두 번째 사례로는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 담합이다.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42조 7,000억 원의 49.1%인 315조 5,657억이 CD 연동대출금액으로, 은행이 CD금리조작으로 0.1%P의

50)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위 발표 2011.10.17 보도자료, 생보사 예정이율, 공시이율담합과징금 3,653억원 참조)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1)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301호, 생명보험사이율담합공동소송제기(2011.4.11.), 발췌인용.

이자를 더 받아 연간 3,1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보았는데 소비자는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이다. 2011.1.13 이후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하였는데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CD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일전에 이미 상승하여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바로 반영한 데 반해, 2012.7.12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CD금리가 3.54%로 고정되어 시장금리의 하락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CD금리가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빨리,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늦게 반영 CD연동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이다. CD금리는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중은행 7개 은행이 발행한 CD를 증권사가 매매 중개한 유통수익률로 산정하는데, CD발행량과 거래량이 적어 자금의 수요자이고 공급자인 은행이 발행금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sup>52)</sup>

증권사는 매매 중개가 없는 경우 전일의 호가로 산정하거나, 은행채, 국고채의 금리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는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있고,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증권사도 있어 담합 소지가 크다.

---

52)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315호(2012.7.19.) ‘CD금리담합 철저히 조사하라.’에서 발췌 인용.

## 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 제 1 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은 2009년 고승덕 의원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으로부터 2013년까지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현재 정부제출안과 정호준의원 발의안 및 민병두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sup>53)</sup> 2010년까지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이었던 반면 201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이 박선숙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sup>54)</sup>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2012년에 발의된 정부제출안과 2013년에 발의된 정호준 의원안과 민병두 의원안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크게 사전적 보호, 상품판매, 사후피해규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정보는 금융교육 및 비교공시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

---

5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발의는 고승덕 의원(2009) 김영선의의원(2009), 권택기 의원(2009), 조문환의원(2010), 박선숙의원(2011), 정부제출안(2012), 민병두의원(2013), 정호준 의원(2013)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요 제안 이유는 고승덕의원안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조문환의원안은 금융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김영선의의원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고 권택기의원안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정책과제가 금융부분 건전성 감독이라는 정책과제와 대등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정부제출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간의 견제와 균형 확보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였다. 노형식,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최근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연구원, 2012.3.

54) 박선숙의원안은 금융규제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음을 재확인 하고 금융감독의 관점을 금융소비자보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심의 및 의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 금융소비자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비자가 불완전 판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판매는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구제는 분쟁조정 절차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 건전성 문제로부터 독립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 1. 정부제출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정부제출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은(제1조)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제6조~제8조),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9조~제25조), 제4장 금융소비자 보호(제26조~제38조), 제5장 감독 및 처분(제39조~제55조), 제6장 보칙(제56조~제57조), 제7장 벌칙(제58조~제61조) 등을 내용으로 하여 총 7장 61개 조문의 본칙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구성된다(<표 5> 참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제5조) 이 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5> 금융소비자보호법안(정부안)의 구성체계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목적)/제 2 조(정의) 제 3 조(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 4 조(적용범위)/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제 2 장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등록 등</p>	<p>제 6 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 7 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 8 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p>
<p>제 3 장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p>	<p><b>제 1 절 영업행위 일반원칙</b> 제 9 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 10조(신의성실의무 등) 제 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 12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 13조(손해배상액 추정)</p> <p><b>제 2 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b> 제 14조(적합성원칙)/제 15조(적정성원칙) 제 16조(설명의무 등) 제 17조(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의 금지) 제 18조(부당권유행위 금지)/제 19조(자료의 기록·유지) 제 20조(계약서류의 발급의무)</p> <p><b>제 3 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b> 제 21조(미등록자에 대한 위탁금지) 제 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 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제 24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금지행위 등) 제 25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p>

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p>제 4 장 금융소비자 보호</p>	<p><b>제 1 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등</b>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 등) 제27조(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제28조(금융소비자 교육)/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p> <p><b>제 2 절 금융분쟁의 조정</b> 제30조(분쟁조정기구)/제3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2조(분쟁의 조정)/제3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제35조(조정 효력)/제36조(소송과의 관계) 제37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3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p>
<p>제 5 장 감독 및 처분</p>	<p><b>제 1 절 감독 및 조치</b> 제39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 제43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4조(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45조(청문)/제46조(이의신청)/제47조(처분 등의 기록 등)</p> <p><b>제 2 절 과징금</b> 제48조(과징금)/제49조(과징금의 부과)/제50조(이의신청) 제51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52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53조(과오납금의 환급)/제54조(환급가산금) 제55조(결손처분)</p>
<p>제 6 장 보 칙</p>	<p>제5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7조(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p>
<p>제 7 장 벌 칙</p>	<p>제58조(벌칙)/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제61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p>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속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설명의무 등 개별 금융법상에 있던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하여 상품유형과 속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체계화하여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sup>55)</sup>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사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고, 사후적으로는 ‘소송중지제도’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범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 (1)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기능별 규제체제를 도입하였다(<표 6> 참조).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판매규제가 부재한 규제공백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차익이<sup>56)</sup> 사례 발생하여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규제공백<sup>57)</sup>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다.

55)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조제7항).

56) 부당광고의 경우 은행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투자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57) 저축은행 등이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의 규제적외 배제되고 대출상품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나, 대출행위를 인·허가를 요하는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 은행이 취급하는 ELD(Equity Linked Deposit, 추가연동예금)은 실적배당상품임에도 원금보장이 된다는 이유로 투자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의무 규제가 없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11.18.) 6면에서는 이것은 유사한 상품에 대한 상이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차익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나 원금의 보장 여부는 사실상 금융상품의 성



업권별 규제는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부수업무 형태로 영위하는 업무, 타업권 상품과 연계한 부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여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 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림 1>참조).

<표 6> 기능별 규제체계의 도입-금융상품 속성에 따른 분류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상 품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	예·적금 등
투자성 상 품	펀드 상품과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보장성 상 품	보험상품과 같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	일반보험상품 등
대출성 상 품	대출상품과 같이 먼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사용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	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현행 금융법상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을 “직판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하였다(<표 7> 참조). 직판업자, 판매대리·중

격을 규정하는 주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ELD를 기타 주가연동상품과 유사상품이라기 보다 별도의 상품으로 본다면 규제공백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개업자, 자문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등록제’로 운영하되 현행 금융법상의 판매채널 진입규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그림 1> 업권별 규제체계와 기능별 규제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11.18.)

<표 7> 기능별 규제체계의 도입-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따른 분류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 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개별 금융업법상 금융회사에 해당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	투자자문업자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어떤 형태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판매행위”를 규율하므로 사전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sup>58)</sup>

(2) 영업행위 일반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장제1절(안 제9조~제13조)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일반원칙으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해석 기준, 신의성실의무와 자기거래 및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직원 및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자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8) 상품속성을 네 종류로 나누고(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행위속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직판/대리·중개/자문)의 4x3 매트릭스 구조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매행위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신의성실의무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규정하여 모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 확대적용 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8> 영업행위 일반원칙

구 분	주요내용
제 9 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적용
제 10 조 신의성실 의무 등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권리행사 및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기거래 및 쌍방대리를 금지
제 11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 임직원 및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성실히 관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제 12 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의 손해배상책임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를 배상
제 13 조 손해배상액의 추정	·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구매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의 추정

(3)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

금소법안 제2장(제6조~제8조)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를 금지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요건에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자”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법상 근거가 없는 신규업자에<sup>59)</sup> 대해서만 신규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표 9>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규정

구 분	주요내용
제 6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영위 금지
제 7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다른 금융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규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영위 시 등록 의무화
제 8 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의 겸영금지

59) 금융상품자문업자와 대출모집인을 말한다.

(4) 판매행위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영업행위 원칙으로서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법안 제9조), 신의성실 업무(법안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관리책임(법안 제11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법안 제12조), 손해배상액의 추정(법안 제13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행위 준수사항들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지켜야 할 포괄적인 의무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개별 금융업권법에 의해 금융권역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업권별로 규정에 차이가 났다.<sup>60)</sup> 이에 따라 동일·유사 금융상품임에도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업권에 관계없이 영업행위 준수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별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차별적으로 명시하였다<sup>61)</sup>(<표 10> 참조).

60)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구 분	자 본 시장법	보험 업법	은행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상호저축 은행법
적합성원칙	○	○	×	×	×
적정성원칙	○	×	×	×	×
설명의무	○	○	○	○	×
구속성상품계약 체결의 금지	○	○	○	×	×
부당권유행위 금지	○	○	×	○	×
광고규제	○	○	○	○	×

자료: 구기성(2012), 24면.

61) 예를 들면 설명의무의 경우 ① 투자성상품: 투자 위험, ② 예금성상품: 이자율·중도해지 수수료, ③ 보장성상품: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로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은 영업행위 준수사항의 상품 유형별로 구체적인 항목들을 설명한 것이지만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업권들에 대해서 영업행위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표 10>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과 적용

	개 념	특기사항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줄 원칙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수익률 변동의 예금성
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	보장성, 투자성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투자성, 예금성 보장성, 대출성
구속성상품 계약체결 금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대출성
부당권유 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보장성, 투자성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	투자성, 예금성, 보장성, 대출성

(5) 손해배상책임의 확보

현행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판매조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52조 제5항(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와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밖에 없다.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하고, 현재 일부 금융업권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6) 신규업자 신설: 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였고, 법적 근거 없이 업권별 모범규준(“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3장제3절(제21조~제25조)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미등록자에 대한 위탁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보험료·투자금 등의 급부수취나 재위임·재위탁, 수수료 이외의 재산상 이익의 수취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금지행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불법브로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개별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을 마련하여 대출모집인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금지행위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모집을 위탁한 금융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7)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제4장제2절(제30조~제38조)은 금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조정의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에 대하여는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어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중지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가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결과가 통보되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5백만원 이하)은 일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8) 과징금제도의 도입

과징금제도는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다.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겸비한 금전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법은 보험업법 등을 제외하고는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해 대부분 과태료 부과(1천 ~ 1억원)만 규정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적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장제2절(제48조~제55조)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소속 임직원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11> 과징금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48조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li> <li>-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li> <li>-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임직원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li> </ul>

구 분	주요내용
제49조~제55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 가산금, 결손처분 등을 규정

### (9)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

금소법안 제4장제1절(제26조~제29조)은 금융소비자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금융소비자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금융상품비교공시제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준 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였다. 업권간 유사상품에 대하여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공시범위·기준 등을 정비하고 업권간 유사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상품군을 기본으로 주요내용을 비교공시하고 펀드·변액보험 등 상품구조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비교가 곤란한 상품은 제외한다.

또한 민원발생평가제도 및 소비자모범규준 근거 마련하였다.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공표권한을 명시하여 민원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10)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정부의 금소법안은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며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금소원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금소원의 권한은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하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한다.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검사·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feed-back)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2. 의원안의 주요내용

의원안들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여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전적 보호제도에서 정호준의원안에는 정부안에는 없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금성 상품을 포함

한 투자성 상품을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sup>62)</sup> 또한 투자성 상품의 판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하여<sup>63)</sup> 전화나 방문 등에 의한 판매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출성 상품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대출금리, 분할상환, 중도 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대출성 상품의 분할상환방식 채용의 무에 위반하는 대출계약의 경우 일반소비자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64)</sup>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정부안에 없는 세 가지를 추가하였다. 첫째,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정호준의원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sup>65)</sup> 정호준의원안은 정

---

62) 제 9 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분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성 상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초고위험 금융상품
2. 고위험 금융상품
3. 중위험 금융상품
4. 저위험 금융상품
5. 초저위험 금융상품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그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위험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63) 제11조(투자성 상품의 판매장소등) ① 투자성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업소, 지점 및 그 밖의 사업장 내에 투자성 상품 판매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외의 장소에서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64) 제15조(대출계약에 대한 취소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2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대출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그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반환할 대출원리금에 충당한다.

65)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안 제12조의 손해배상 추정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이를 제44조에서 전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추정조항에서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입증책임을 적용한 것이다. 둘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투자성 상품의 판매규제 위반과 분할상환조건 채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sup>66)</sup> 셋째,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제도를 포함하였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법을 위반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7)</sup>

민병두의원안은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금지되는 소액분쟁사건의 범위를 2천만 원까지로 확대하였고(제43조) 정호준의원안이 채용하지 아니한 정부안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추정조항’을 채용하였다(제45조 제2항). 또한 금융상품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광범위한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8)</sup>

66) 제4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구매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67) 제45조(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68) 제45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광범위한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로서 금융상품업자가 위법행위로 인해 수취하였거나 향후 수취하게 되는 수입금액이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의원안은 정부안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우선 투자성 상품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계약 취소권을 통해 불완전 판매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후적 구제에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구제에 있어 정부안에 비해 금융소비자권익을 강화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 제 2 절 체계성 평가

정부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 사전적 보호체계에서 의원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금융상품 분류와 대출성 상품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사후적 구제제도로는 정부안의 과징금 제도 외에 의원안에는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69)</sup> 공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1. 입법목적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목적을(제1조)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

---

3. 금융상품업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69) 이후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정부안’으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원안’으로 표기한다.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 제26조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수립하여야 하는 금융소비자정책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목적에 금융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두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충될 수도 있다. 2000년 제정된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적정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법제화하였다. 여기에는 금융산업의 발전 보다는 금융체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7년 노던락은행이 파산하면서 통합형 감독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기능을 분리시키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가 단기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 제1조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목적으로 한 것은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의 육성이 금융소비자보호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단기적으로 상충되는 결과가 얼마든지 초래될 수 있다.

또 정부안 제10조(신의성실의무)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상품판매업의 육성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해석을 시도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 7월에 발의된 박선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은 동 법안의 목적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고 금융산업의 육성은 목적에 포함하지 않았다.<sup>70)</sup>

## 2. 적용 범위

정부안 제2조제1호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업권별로 적용되는 상품을 열거하였다.<sup>71)</sup> 이것은 우체국금융 등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닌 유사금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우체국 금융등 유사금융의 경우 소관법에서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sup>72)</sup>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취지가 업권별 규제가 아니라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새마을 금고와 우체국에 대하여서만 기관별 구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70) 박선순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2011.7.13.)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1) 제2조(정의)에서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및 연불판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의 기관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소규모 금융은 전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대부업도 개별 사업체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업의 경우 그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12,486개가 있으며, 대부잔액은 8조 7,175억 원이고, 거래자수는 252만명 정도로 건당 대출금액은 346만원에 이르고 있다.<sup>73)</sup> 금융감독원은 2011년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최고이자율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상위 44개 업체에 대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바 있는데, 총 167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대부업체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부업체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sup>74)</sup>

또한 최근 수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상<sup>75)</sup>

73) 대부업체를 거래하는 이용자는 회사원(63.8%), 자영업자(21.3%), 학생·주부(5.8%)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65.6%, 1~6등급이 31.2%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9,372건이고, 이 중 피해신고는 6,213건으로 대부업체와 관련된 금융분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2012.5.10.

74) 노태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1호, 2013, 121면.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

펀드와 구분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지칭하는 4개의 기능별 유형에 속해있지 않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의 유형을 말한다. 이것은 신탁의 대상이 사물이 아닌 금전이 되므로 신탁법에 의해 규정이 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펀드와는 다른 개념이다.<sup>76)</sup>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은 별개의 금융상품이지만 실제로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이 펀드와 유사하게 운용되는 경우가 있어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수신고는 2010년 말 138.9조원에서 2013년 6월말 197.5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은행부분의 수신비중은 2008년 말 29.6%에서 2013년 6월 말 51.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재산을 지정한다는 성격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아니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투자상품의 운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sup>77)</sup> 그러나 특히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으로 하여 투자위험이 고도로 높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겸 수탁자가 운용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실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분쟁으로 간 경우 금융투자상품 만큼 투자자의 보

---

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76) 김상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BFL 제6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8면.

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개별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 집합주문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 체계성 원칙적으로는 신탁재산을 집합적으로 운용할 수 없지만, 개별 신탁재산을 분별할 수 있는 경우 비용절감 등을 위해 매매주문 집합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구정환,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012.10.27.~11.2. 11면.

호가 실질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sup>78)</sup> 위탁자가 자산의 운용에 대해 운용자에 비해 그 정보나 지식이 열위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나 금융소비자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데, 특히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으로 하여 투자위험이 고도로 높은 복합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되었음에도 투자자가 운영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sup>79)</sup> 2013년 12월 4일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자 자격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규제 체계와 규제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법들에 존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조항들과 새로운 규제들을 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5개 개별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들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규제를 정한 것이다.

규제체계가 이렇게 달라졌지만 현행법들에서 영업행위 준수사항들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내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안을 구성하는 주요내용들 중 기존에 개별법들에 있던 것들을 단지 이관해온 부분들과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로 구분해 보면 동 법안이 어떤 면에서 소비자보호체계가 강화된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8) 안수현, “금융상품거래와 신뢰”, BFL 제61호, 서울대금융법센터, 2013, 53-54면.

79) 2013년 하반기 동양증권사태로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우리은행에서도 특정금전신탁 금융피해로 인해 2013년 10월 2일 이학영의원, 정호준의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공동으로 피해자 모임을 가졌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나타난 금융상품의 기능별로 살펴보면 투자성 상품의 경우 신의 성실의무와 6대 판매행위 규제가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그대로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성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 정호준의원안 제44조에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추가되어 투자성 상품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정부안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미흡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 자본시장법 제48조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추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업자로의 입증책임의 전환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안 제13조(손해배상액 추정)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또한 부당권유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부안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히려 제재의 수준이 현행보다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적정성과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수익률이 변동하는 주가연동 예금상품의 경우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새롭게 규제가 강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예금성 상품에 대해 적정성 및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벌칙 조항이 없고 또한 적성성의 원칙의 경우 정부안에 보장성과 투자성에 대한 조항만 들어 있어 예금성 상품에 대해 적용이 되는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제시하는 6대 판매행위 규제 중 보험업법에서 이미 5가지가 규제되고 있고 여기에 적정성의 원칙이 추가된 것이다. 대출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구속성상품 계

약 체결 금지(정부안 제17조)조항을 통해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규제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기존의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소비자보호 규정들과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선 손해배상 추정규정의 경우 정부안 제13조에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만 언급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적용을 모호하게 한 측면이 있다. 손해배상액 추정이 필요한 사항은 투자성 상품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추정규정이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에만 해당되고 있던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도 그대로 투자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 전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의 의미가 약하다.

둘째, 구속성상품계약의 금지조항(정부안 제17조)은 주로 대출성 상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 체결은 반드시 대출관련 상품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은행법 제62조는 여신거래이외에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80)</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출상품의 경우 정부안에는 대출계약 취소권에 대한 조항이 없다. 정호준의원안 3장에 대출성 상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안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기존의 법률 조항 외에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내용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은행과 여신전문기관,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법에서는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포함됨에 따라 위 기관들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규제가 강화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적정성

80) 은행법(2010.5.17.) 제52조의3의4항.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그 대상이 보장성 및 투자성 상품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성 상품의 적용여부는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적합성 원칙의 경우 주가지수연동예금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아 선언적 규정이 될 수 있다.<sup>81)</sup>

6대 판매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금융상품 유형별로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규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지 그 대상이 해당 범조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상품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sup>82)</sup> 기본적으로 투자성상품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행위 규제가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정부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내용이 기존의 개별법들의 소비자 보호 규정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 4. 개별법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업권별이 아닌 기능별로 규제 체계를 수립하였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개별법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부칙에 의해 기존의 개별법들은 개정이 된다(<부록> 참조).

81) 구기성(2012), 검토보고서(정부안), 25면.

8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2012.5)에서는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용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품별로 적용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설명의무의 경우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위험, 예금성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율 및 중도 해지 수수료, 보장성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 및 지급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상품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지 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능별 규제체계가 기존 개별 금융업법 규제체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조에서 다른 금융관련 법률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적용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 (1) 규제관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판매규제는 금소법에 통합하지만,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규제는 개별법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승환계약 금지 등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규제는 여전히 개정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개별 보험업법에 남아 있다(<부록> 참조). 따라서 일련의 연속적 행위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규제정책(금융위원회)-상품개발(금융감독원)-판매권유(금융소비자보호원)-상품공시(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계약이행(금감원) 등으로 나뉘어 감독의 경계와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가 있다(<표 12> 참조).

<표 12> 영업행위감독과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규제 비교

구 분		영업 행위감독	
		금소법상 규제	개별법상 규제
상품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 약관,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기초서류 등 심사</li> </ul>
판매 규제	금융상품 모집 조직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중개업자 등록</li> <li>- 대출모집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중개업자 등록</li> <li>-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li> <li>- 투자권유대행인</li> <li>- 카드모집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자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문업자 등록</li> </ul>



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구 분		영업 행위감독	
		금소법상 규제	개별법상 규제
	판매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명의무·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부당권유 금지·광고규제·구속성 계약 체결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방카슈랑스 판매방식 규제, 금투업자 임의매매 금지 등</li> </ul>
	상품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상품간 비교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상품 정기·수시공시</li> </ul>
	계약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펀드 환매방법 규제(익일 기준가 환매, Late Trading 등)</li> <li>보험금 지급시 설명의무 등</li> </ul>
시장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기업 증권신고서 등 기업공시 업무</li> <li>불공정거래 조사업무</li> <li>회계기준 수립 및 감리 업무</li> </ul>

자료: 금융감독원<sup>83)</sup>

즉 단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상품의 거래 단계에 따라 규제되는 법률과 감독기관이 달라져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회사 위법행위 제재, 소비자 피해구제 과정 등에서 상당한 규제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sup>84)</sup> 따라서 기존의 개별법과 새롭게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적용대상 구분이 모호하거나 충돌할 때에는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83) 한국법제연구원 금융소비자 불만 실태와 법적과제(2013.8.12.) 토론 자료.

84)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 1건의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및 중복가입 확인의무 위반, 승환계약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금소법이, 중복가입 및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 적용된다.

## (2) 처벌조항

일정한 영업행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정안에서는 과징금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금융업법에서 벌금 및 과태료 등이 규정된 경우 동 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당권유행위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자본시장법 제445조제6호). 또한, 불초청권유행위,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투자자(전문투자자와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2호)(<표 13> 참조).

반면 이들 행위는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재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벌금형과 중첩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lt;표 13&gt; 개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재조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원칙	없음	과태료 - 5천만원	행위규제 ○ 제재규정 X	없음
적정성원칙	없음	행위규제 ○ 제재규정 X	없음	없음

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	과태료 - 은행 5천만원 - 임직원 1천만원	과태료 - 5천만원	과징금 - 수입 보험료의 20% 이하	- 과징금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30% 이하 - 과태료 5천만원
구속성상품 계약체결 금지	과태료 - 은행 5천만원 - 임직원 1천만원	없음	과태료 - 5천만원	상동
부당권유 행위금지	없음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 수입 보험료의 20% 이하	상동
광고관련 준수사항	벌칙 - 은행 3천만원 과태료 - 은행 5천만원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 수입 보험료의 20% 이하 과태료 2천만원이하	상동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 3천만원

자료: 노태석(2013), 126면.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다른 금융관련 법률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벌금형과 중첩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만, 과태료와 중첩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만 부과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벌금은 형사벌이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중첩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sup>85)</sup>

### 제 3 절 사전적 보호제도의 효과성 평가

#### 1. 판매행위 규제

2008년 이후 키코, 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사태등 금융소비자피해가 커지고 이것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각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금융소비자피해는 현재 금융소비자법안에 마련된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포함된 판매행위 규제들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적정성 및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과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적절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줄 원칙이며 적정성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한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적정성과 적합성 원칙의 차이는 본질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통상 구매권유를

85)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판매행위 및 관련규제 검토”, 한국 금융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3. 30면.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을, 구매권유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에도 자본시장법에는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고 보험업법에도 적정성원칙은 없었지만 적합성 원칙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주요한 금융소비자피해사건은 적정성 및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것이었다.

펀드의 경우 펀드판매사가 펀드 구매의 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에게 펀드를 사도록 권유하거나 퇴직자나 고령자가 노후대비용으로 구매하는 펀드의 경우 위험성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상품을 권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이러한 성격을 알리지 않는 경우 적정성과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로 알려진 파워인컴펀드는<sup>86)</sup>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책임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펀드와 피해 고객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것은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매를 권유하거나 구매를 ‘묵인하여’ 적정성 및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생각되며 구매자는 이러한 상품계약으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된 사건임에도 대법원은 일부 승소의 판결만 내림에 따라 역시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86)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우리금융그룹 계열 은행들과 증권사가 판매하고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파생상품펀드 2006년 11월과 12월 향후 6년간 매 분기에 6%의 고정금리를 지급한 안전한 펀드로서 대한민국 국채보다 안전하다는 홍보하에 약 2천 300여명의 고객들에게 총 1천 700억원이 판매된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므로 펀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많은 고령자들이 펀드를 구매하였으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파워인컴펀드 사태는 적정성과 적합성의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적합성·적합성 원칙 조항이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사실상 모호하다. 판매자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렸다고 해도 과거 실적이 정기예금보다 높았던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을 알린다 해도 이러한 고지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sup>87)</sup> 실제로 파워인컴펀드는 판매 전 과거 1~2년간 펀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위험사실을 알린다고 하여도 고객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상품에 대한 피상적인 설명은 오히려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상품계약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만일 적합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은행은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상품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공정행위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특정 상품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단지 ‘금리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은행과 고객의 최초의 대화 내용으로 이러한 위반사실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것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장에 소개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역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용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87) 필자의 지인(80대)이 ELS 펀드를 구입할 때 필자가 그 위험성에 대해 여러 번 알렸으나 펀드의 최근 과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은행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구매를 계속하였고 결국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원금손실을 보게 되었다.

적정성·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는 보험상품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3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변액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한시적 운동선수인데 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부하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경제적 여건은 월 80만 원씩 받는데 변액보험료로 월 160만 원씩 권유하는 등 소비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수당 등에 치우쳐서 보험을 가입시킨 피해 사례의 경우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2012년 금융소비자 피해 통계를 보면 2012년 중 최대발생민원영역은 보험영역이었다(3장 참조). 보험모집이 13,4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23.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은 1만 3천여건 보험모집과 건수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전년대비 44.8%가 증가하여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모집과 보험금 산정 분야의 민원은 26,493건으로 전체 민원건수의 34%를 차지하였고 기타 보험관련 민원은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보험관련 민원이 금융소비자 피해 중 가장 피해건수가 큰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보험모집과 관련한 피해는 적합성원칙 위배와 관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보험업에서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금융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보험분야라는 것은 이 분야의 금융소비자 규제가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마련된 계기가 된 것은 대형 금융사고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금융시장의 변동과 불확실성과 금융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소비자 보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규제가 왜 실효성이 적은지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행위 규제와 함께 상품의 위험도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호준의원안에는(제9조) 금융상품 등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지 전에 그 위험성의 정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완전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2) 설명의무

설명 의무는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설명의무의 위반은 부실고지 혹은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등을 말한다. 이는 원금이 손실된다는 사실, 보험상품의 연금 전환 여부, 파산 등의 위험, 환차손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KIKO사태<sup>88)</sup>의 경우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상품은 환헷지를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서 중소기업이 금융환경 변화로 손실을 입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sup>89)</sup> 저축은행사태는 2011년 2월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서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 사건이다.<sup>90)</sup>

88) KIKO(Knock-in, Knock-out)란 환율이 일정 범위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10년 6월 현재 기업의 KIKO 거래로 인한 손실은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추정되었다. 백주선,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와 규제입법방향”,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2012.12.27. 17면.

89)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키코 소송 사태가 시작되었고, 이어 11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5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헷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은행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경우 피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져야 하고,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되었다.

90) 2011년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들에 영업정



이러한 사태들은 소비자가 환위험을 피하고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 거래규모가 훨씬 작았을 것이다. 파워인컴펀드 사태의 경우도 적합성 원칙의 위반과 함께 부실고지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소비자들이 만일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라면 역시 거래규모는 훨씬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금손실 위험에 대해 금융기관이 설명을 했는가의 문제보다 ‘어떻게’ 설명했는가가 중요하다. 즉 환위험이 있지만 최근 몇 년의 추세로 보아 환율변동이 계약취소범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던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추가설명을 덧붙인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설명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문제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의 경우 수년 동안 지속된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게 된 정보공시 혹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피해에 더 가깝다. 이러한 문제들은 판매행위에 설명의무를 부과했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소비자가 판매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판매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기존 자신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판매자가 위험에 대해 사무적으로 간단히 언급

---

기조치를 내렸는데 이 때 약 8만 2천여명 약 5천억원의 예금자 피해와 2만 6천여명이 약 8천 5백만원 가량의 후순위채 피해를 보았으며 예금보험공사 투입비용까지 합계하면 약 26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백주선(2012), 20면.

하고 지나가는 경우 판매자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것인 반면 소비자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sup>91)</sup>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주요 위험에 대해 실제로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역설적으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소비자가 소송과 분쟁에서 이길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2.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2조제5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업무 단위 중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며(제8조),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는데(제7조제2항제2호) 정부안에서는 법인만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5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91)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은 직접 판매자 제조자는 잘 알 수도 있지만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매 대리인이 상품을 완전히 이해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 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어느 금융상품판매업자와도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자문에 응한다는 사실과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그리고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제24조 제4항). 또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의 행위들이 금지된다. 첫째,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행위이다. 정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판매업 간에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없다.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안은 법률안에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는 배경은 일부 보험대리점 등이 소비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 때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없어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객관적인 자문서비스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기 보다는 자신이 판매중인 금융상품 위주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속 상담원이 개인자격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자문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 확보 등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문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

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자문하도록(Whole of Market)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영국의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가 부담하는 의무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며,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금융법 상으로는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자문업자의 근거가 있으나, 자문범위가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금융회사들이 여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함에 따라 거액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한 PB 고객 등 거액 자산가를 상대로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사실상 금융상품 판매채널에 불과하며, 기타 재무설계회사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일반 용역계약 형식으로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영업 확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문서비스 제공 인력·행위규제 등이 미비되어 시장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자문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 등이 업권별로 상이·혼재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 전문성 관리가 미흡하며, 소비자들이 자문서비스가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 데에 비해, 사실상 특정 상품판매목적의 자문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행위규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sup>92)</sup>

금융소비자들의 합리성이 “제한적”이라면 금융소비자 교육만으로는 금융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고 결국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개별 증권 종목의 매매를 할 때에도 판매회사의 직원들과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면을 고

92) 손정국,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 2013, 18-22면의 내용을 게재한 것임.

려할 때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도입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sup>93)</sup>

성희활(2011)<sup>94)</sup>도 중립적 금융상품 자문의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교육의 강화보다는 금융교육과 더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으로 중립적 금융상품의 자문기능 강화를 지적하였다. 성희활(2011)은 독립적 자문이 시장에서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같은 독립적 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연태훈(2010)<sup>95)</sup>은 우리나라도 공익적 자문서비스 지원책들을 참고하여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제된 정보제공을 확대할 것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기반의 독립적 금융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바우처제도 등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태훈(2012)<sup>96)</sup>은 또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이해상충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경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호주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작업을 참고하여<sup>97)</sup> 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들이 최선혜택의무를 부여하고 판

---

93)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도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투자자 열 명 중 약 여섯 명은 판매회사에 와서 판매직원의 권유를 받고 펀드를 결정한다고 응답한다(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2 펀드투자자조사”, 2012. 12).

94)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 30권 제2호, 2011.

95) 연태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제언’, *주간금융브리프*, 19권 49호, 2010.

96) 연태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의 정비”, *주간금융브리프* 21권 44호, 2012.

97) 호주는 금융자문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의 이해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자문 관련법을 2013년에 개정하였고 영국도 2013년부터 독립금융자문업자들이 금융상품제조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보수 및 수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판매와 자문의 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할 것인가 완전한 분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sup>98)</sup> 독립금융자문업의 신설과 그 규정이 현재 판매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문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판매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출을 해서 자문업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클지 의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자문업자 자격요건을 강화시키게 되면 독립자문업자가 사업을 하는 방해요소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자문업 시장을 위축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정부안에는 판매사가 판매와 자문을 겸영을 부분적으로 허용 해놓았는데<sup>99)</sup>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된다.<sup>100)</sup>

### 3. 금융소비자 교육과 비교공시

정부안 제28조와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첫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원론적 규정(제1항)과 함께, 둘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제2항)을 두고 있다.

98) 정재만, “선진금융자문업 현황과 금융자문업 발전방향”,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FP학회 춘계세미나, 2013.

99) 금융상품자문업자가 판매를 동시에 할 경우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판매업간에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정부안 제24조).

100) 유진, 손정국,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2011. 10.

그러나 금융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법률안에서는 금융교육을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sup>101)</sup>

최근 금융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Willis(2008)는 미국에서 금융교육의 한계를 지적하였다.<sup>102)</sup> 금융교육은 지식이 있고 책임이 있고 만족하는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실증조사에 의하면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소비와 투자를 하거나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더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인들로는 정보의 비대칭이 큰 금융소비자들이 아주 가끔씩 금융 결정을 하며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교수들의 능력 및 소비자들의 지식과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금융교육의 문제점으로 금융교육은 시간과 비용 및 노동력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며 국가로 하여금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회피하게 하며<sup>103)</sup> 소비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하게한다는 것이다.

Willis(2008)은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목표가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반대로 스스로 자기의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

101) 손정국,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3. 16-18면.

102) Lauren E. Willis, “Against Financial-Literacy Education” 94 *Iowa Law Review* 197, 2008; Lauren E. Willis, “Evidence and Ideology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46 *San Diego Law Review* 415, 2009.

103)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을 마련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의미이다.

것이 금융소비자 교육의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sup>104)</sup> 첫째, 금융소비자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잘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과, 금융상품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또한 금융회사들의 판매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의사결정을 할 때 인지적, 감정적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예를 들어 판매직원의 구매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서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가르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전문가를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 물론, 금융상품을 이용할 필요성 등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sup>105)</sup>도 가르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sup>106)</sup>

정부안 제29조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민원에 관하여 그 발생 규모 및 처리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별 업권별로 각각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 관리하여 공시범위·기준 등을 정비하고 금융소

104) Willis, L., "Against Financial-Literacy Education", 94 *Iowa Law Review* 197, 2008.

105) 예를 들어 아직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 상품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다.

10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에 근거해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실시하여 2012년 9월에 "Study Regarding Financial Literacy Among Investor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응한 기관들은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위험, 분산, 복리 등 기본적 금융개념을 가르쳐야 하고, 투자자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험 유형, 투자와 관련된 수수료와 비용, 사기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 복리 등 일반적인 투자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손정국(2013), 41면에서 재인용.



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시정보를 개발·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비교 공시를 강화하는 경우 펀드 등 투자 상품은 비교 공시가 가지는 범용적 한계와 함께 종류와 숫자도 많고 향후 수익률을 예측할 수도 없어서 금융소비자들의 실제로 큰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펀드 또는 판매회사에서 권유받은 펀드를 기준시점으로 비교할 수는 있다면 투자 상품이 아닌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비교공시의 예상 효과를 충실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적기관이 비교공시를 담당하게 되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정보를 얻어 금융소비자의 약자의 지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107)</sup>

## 제 4 절 사후적 구제제도의 효과성 평가

금소법안에서 사후적 구제를 위한 전제가 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실체법적 의무를 확대하고 명문화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들 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선 손해배상과 처벌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사후구제를 위해 정부안과 의원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손해배상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하여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발생시 1차적으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

---

107) 손정국,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 영국의 사례와 국내시장에의 함의”,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2011.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제정안 제48조제3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판매업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면책조항은 이러한 규정의 실제적 효과를 반감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여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대리업자와 거래를 통하여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상호간에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중개·대리업자는 손해배상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배상책임이 직접판매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 2. 소송중지제도

정부안은 「환경분쟁조정법」상 도입되어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법원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시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신된 경우에

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중단시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법원의 소송중지 결정 시 금융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에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 제32조제2항은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정부안과 같이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소의 제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안 제32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08)</sup>

### 3.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법률 소송상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임이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가 소송재판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며, 피해를 당한 쪽에서 입증책임

---

108) 구기성(2012), 37면.

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가한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입증책임의 전환’이라 한다.

원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해소송, 의료소송 등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하게 하는 추세이다.<sup>109)</sup>

금융소비자 피해의 경우도 의료소송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공동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금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이를 획득해 법원에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사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증책임의 문제이서 금융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증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에 도입된 소비자계약법에서는 (금융소비자계약에도 적용)이 일정한 경우(오인 또는 곤혹에 의한 거래시)에 거래자체의 취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보다 쉬운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10)</sup> 따라서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109) 정순섭,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 분쟁해결 · 민사적 제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81~83면.

110) 일본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적정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계약내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당한 소비자계약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질 및 양 그리고 교섭력의 구조적 격차를 입법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오인’에 의한 취소권과 ‘곤혹’에 의한 취소권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우선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를 할 때에 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지하거나(‘부실고지’), ② 장래의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

으나 정호준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입증책임의 전환은 실제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의 손해전보 책임에 형사상의 벌금을 혼합한 영미법상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한 법률이 있다.<sup>111)</sup>

금융소비자 개개인은 손해배상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노력, 금전을 모두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

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③ 중요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불이익사실의 불고지’), 당해 사항에 관하여 오인을 하고 이로 인해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1항).

111) 2013.5.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금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두는 것만으로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2)</sup>

현재의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중 정부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호준의원안에는 금융상품업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자 제안하거나<sup>113)</sup>, 특별한 위법행위를 규정하지 않은 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sup>114)</sup>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의 미약한 지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 피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소비자 피해금액은 크지만, 피해자 개인당 피해금액은 소액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소송비용이 받을 금액보다 더 들어가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판결의 효과

112) 김현수·윤용석·권순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76-77면.

113) 민병두의원안 제45조제3항.

114) 정호준의원안 제44조제2항.

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이는 개별적 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이다.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피해사건의 특성을 몇 가지로 추출해 보면 ① 사건의 집단성, ② 사건의 복잡성과 전문성, ③ 사건의 국제성, ④ 사건의 시스템관련성, ⑤ 사건의 정보비대칭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사건이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대개의 금융소비자피해사건은 다른 소비자피해사건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금융상품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sup>115)</sup>

둘째, 피해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사건의 복잡성과 전문성은 파생금융상품이 발달하는 등 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 자체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사건의 국제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느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소비자관련 분쟁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는 금융거래기법이나 금융상품이 다국적 금융회사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한 구조화채권(CDO)관련 분쟁은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였지만 홍콩에서는 미니본드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파워인

---

115) 김상조,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센터 정책심포지엄, 2009. 82-84면.

컴펀드사건으로 나타났다. 키코사건 역시 유사한 통화옵션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었고 유사한 분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국제적인 시각, 비교법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네 번째, 사건의 시스템 관련성이다.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은 그 발생도 금융시스템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해결도 금융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금융업자의 탐욕이나 실수만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그 당시 금융거래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금융거래시스템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융소비자피해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향후 금융시스템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의 해결에는 정치적, 정책적 고려가 많이 개입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사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을 보면 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는 피해원인은 물론이고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 거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금융업자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소비자는 이러한 자료나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법적구제의 틀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sup>116)</sup>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들이 소송을 해서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렵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개개인이 소송해서 보상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집행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현행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을 통합하여 소비자기본법 상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116) 김주영, “금융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법제도상 장애과 그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과제와 전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세미나 자료, 2013, 73~75면.



있다. 금융소비자피해중 상당수가 집단적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집단적 성격의 금융소비자피해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17)</sup> 집단소송제는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하여 도입되어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하는데 원칙적으로 큰 장애는 없다고 판단된다.<sup>118)</sup>

## 제 5 절 소 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산업의 경영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의 발달로 각종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화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법안에는 먼저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하여 규제공백을 줄이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소비자교육 및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사후적 규제제도로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액분쟁에 대해 소송중지제도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금소법안

---

117) 정순섭(2009), 84-85면.

118) 김재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문제점”, 한국금융법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14면.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시도해보았다.

먼저 체계성 평가에서 정부안은 입법목적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우선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금융소비자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들이 있어 적용범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법에서 업권별 규제체제에서 기능별 규제체제로 전환하여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업권별로 상품별로 규정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가 강화된 내용이 크지 않으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 오히려 약화된 면도 없지 않다. 또한 개별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필요한 조항들을 이관하여 통합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개별법의 조항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규제관할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도 발견된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주로 영업행위 준수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된 대형 금융사고들과 최근의 금융소비자피해 현황과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적정성원칙, 적합성 원칙, 그리고 설명의무 등 주요한 판매행위 규제는 자본시장, 보험업시장 부분에 개별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은행업에 적정성과 적합성 원칙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나 이를 위반시 분명한 제재규정이 여전히 없어서 그 실효성의 의문시 된다.

그러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신설 및 비교공시 강화 등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지식과 정보는 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금융교육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점도 제기되어 금융소비자 교육보다는 독립적인 금융상품자문의 증대가 실제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후적 구제제도로는 손해배상제도와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 피해를 위한 사법적 구제에 장애가 많아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국가에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 5 장 바람직한 입법방향 및 결론

### 제 1 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사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건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대등한 거래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현실의 사례들에서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과 대등한 거래자가 되기가 어렵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은 단지 금융상품을 만든 제조사와 소비자간의 상품내용에 대한 비대칭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경제환경과 시장환경,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금융상품의 속성들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고급정보를 소비자들이 시의적절하게 갖추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금융기관이나 전문가는 항상 금융상품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그러한 지식을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은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행정규제 위주의 정책만을 실시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적 규율이 미흡하여 소비자의 손해는 사업자의 부당이득으로 전환되고, 불완전판매로 얻은 사업자의 부당한 이득 경험은 결국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불완전판매의 재시도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동등한 거래자로서 금융소비자의 거래 환경과 거래조건에만

초점을 둔다면 소비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히려 금융기관들을 보호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사후적 구제에서도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비자는 금융거래를 하는 순간 수많은 약관의 조항에 동의해야 하는데 사실상 소비자가 그 내용을 다 읽거나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였을 때는 이미 금융소비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에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가 어려우며 일단 성립된 계약에 의해 소비자는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 문제의 핵심은 또한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 크게 발생하는데 있다. 정보의 비대칭은 구매단계에서도 발생하지만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보의 비대칭은 사후적 구제를 어렵게 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여 이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해 피해구제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금융소비자 교육으로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금융소비자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되고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금융소비자는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으며 정보력과 협상력에 있어 금융기관과 대등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거래와 계약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사전적 보호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까지 있었던 불완전판매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불완전 판매의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줄어들 수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정보와 이해력이 약한 소비자가 법이 준수되는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사전적 보호 이전 단계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정보와 대응능력이 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공정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불리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관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대등한 거래조건을 법으로 명시한다고 해도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상품 자체에 대한 평가와 감독이 필요하다.

2011년 1월에 영국의 FSA는 “상품개입”(Product Intervention) 정책을 발표했다.<sup>119)</sup> 상품개입은 금융상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정책인데, 공시와 금융교육으로 만으로는 자율과 혁신을 기초로 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져 공급자가 많은 시장에서조차 경쟁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FSA가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20)</sup>

둘째, 금융기관간 담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담합을 하여 금리나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한다면 소비자는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영업행위를 모두 준수한 공정한 거래를 한다고 해도 불리한 위치에 있

119) FSA, “Product Intervention”, 2011. 1

120) FSA는 특히, 소비자들이 상품을 알아보는데 공시를 이용하지 않으며 일부 상품은 복잡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 된 공시나 적합성 요구와 같은 판매 표준 규제들도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두게 된다고 보았다. 즉, 금융역량강화정책을 추진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FSA가 판매시점과 판매 이후 뿐 아니라 상품의 개발 단계와 판매전략 수립 단계에도 개입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임을 밝혔다. 손정국(2013), 전계서, 26면.

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간 담합을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한 금융상품자문 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자문이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문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민간의 자문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과연 자문을 받으려 할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만일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가 금융상품별로 혹은 소비자 유형별로 금융상품 혹은 포괄적인 금융소비자 자문을 할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융자문업의 영역에서도 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혹은 감독기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소비자 보호 관련법 재정립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는 어렵다. 4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안에는 제외되어 있는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사후적 구제 강화를 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피해문제는 단지 금융소비자보호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피해사건은 여러 가지 법적 장애사유로 인해 피해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관련 법제들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들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sup>121)</sup>

121) 한국법제연구원, “<참고> 제19대 국회 금융소비자 권익관련 입법 추진 현황”, 금융소비자불만 실태와 법적 과제, 입법평가 회의자료집 ④, 36-40면 참조.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사후적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과 함께 관련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기록의 보관유지 의무에 관한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 모든 증거자료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편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피해자들에게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소비자보호당국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경우도 기록유지관리 의무만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제25조),<sup>122)</sup>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당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47조)<sup>123)</sup>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유지하는 기록을 소송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증거개시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자료를 피해자에게 협조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sup>124)</sup>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 밖에도 입증책임 전환, 계약 철회권, 손해배상 추정조항개선, 시효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며

122) 제25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3) 제47조(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원장은 제40조(금융위원회로 한정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원장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44조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원장에 자기에 대한 제40조(금융위원회로 한정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및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4) 김주영(2013), 64-65면.



또한 절차법으로서 증거개시제도, 소송비용제도 개선, 감정제도의 개선,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선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하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sup>125)</sup> 따라서 실제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법안의 제정과 함께 실제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사유들을 제거해나가는 관련법 개정들이 필요하다.

### 3. 공적 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구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의 현실적인 한계는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사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약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매행위규제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약자의 지위라는 현실을 고려한 소비자보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전에 소비자의 취약한 속성에 대비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호기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상품개입이나 금융기관간 담합 금지 등은 소비자를 위한 보호 및 감독기구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sup>126)</sup>

또한 금융소비자는 협상 능력 면에서나 경험적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EU집행부는 많은 정책 중에서도 소비자보호 정책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옴부즈맨은 금융분쟁에 있어서 하나의 조정기구로서 해당영역에서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없으

125) 김주영(2013), 101-102면.

126) 홍은주,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타당성에 관한 정책연구', *여성경제연구* 제7집 제2호, 2010.

므로 이러한 조정 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ombudsman제도와 같은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가 어떠한 형태와 성격을 가져야 하는 가는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으  
 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과제이다.

## 제2절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인 패러다임이 금융회사 중심에  
 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으로 아직 법안  
 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에서 소비자  
 와 금융기관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이러한 점을 잘 보  
 여 주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사전적 구제방안들로 기능별 규  
 제와 금융상품 자문업의 도입, 그리고 소비자 교육강화 등을 마련하  
 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금융상품의 적용범위가 아직  
 불완전하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피해 현실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 준  
 수 규정들의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 불공정한 약관이나 금융기관간의  
 담합등은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아무리 금융지식을 갖  
 춘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의 사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을 대등한 거래  
 자로 가정하여 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지위에 대한 현실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사후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 배상의 도입 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최근 발의된 의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발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고는 사후적 구제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소비자의 약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 수단을 위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는 약관심사 등 상품개입과 금융사간 담합 금지, 공적 자문서비스 등 보다 근본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은 독립적인 공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는 정보공시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연구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구기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2.
- 구정한,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1권 42호 2012.
- 김상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BFL 제6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 김상조,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금융연구센터 정책심포지엄, 2009.
- 김주영, “금융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법제도상 장애와 그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과제와 전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세미나 자료, 2013.
- 노태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제1호, 2013.
- 노형식,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최근 발의된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법안을 중심으로’, 금융연구원, 2012.
- 변제호 외,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2009.
- 서희석,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특징과 개선방향”, 금융소비자 보호의 법적과제와 전망,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세미나 자료, 2013.
- 성승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2011.

참 고 문 헌

- 손정국,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자문업: 영국의 사례와 국내시장에의 함의”,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2011.
- 손정국,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 2013.
- 안수현, “금융상품거래와 신뢰”, BFL 제61호, 서울대금융법센터, 2013.
- 연태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제언’, *주간금융브리프*, 19권 49호, 2010.
- 연태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의 정비”, *주간금융브리프* 21권 44호, 2012.
- 원승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2009.
- 오영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1.
- 유진·손정국,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자문업”,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2011.
- 이경주·이현복,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체제의 평가”, *금융소비자연구* 제1권 제1호, 2011.
- 이기종,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2012.
- 정대근,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2권 제1호, 2010.
- 정순섭,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분쟁해결·민사적 제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 정윤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이슈 분석”,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4 No.1, 자본시장연구원, 2012.

- 정재만, “선진금융자문업 현황과 금융자문업 발전방향”,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FP학회 춘계세미나, 2013.
- 조연행, “금융소비자 불만의 원인과 해결방안”, 금융소비자불만실태와 법적과제,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 한재준 외,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책심포지엄, 2009.
- 홍은주,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타당성에 관한 정책연구”, 여성경제연구 제7집 제2호, 2010.
- 황진자, *금융상품의 불완전한 판매와 소비자 보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10.
- 황진자, “불완전판매 현황과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금융소비자 불만실태와 법적과제,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 황진자, *약관규제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 금융감독원, 2010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 HM Treasury, “Reforming Financial Markets”, July 2009.
- FSA, *Towards a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 2003.
- Squam Lake Working Group on Financial Regulation, “A Systemic Regulator for Financial Marke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May 2009.
- Willis, L., “Against Financial-Literacy Education”, 94 *Iowa Law Review* 197, 2008.
- Willis, L., “Evidence and Ideology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46 *San Diego Law Review* 415, 2009.

부  
속

[ 부 록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 행 법	개 정 안
<p>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p>
<p>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p>	<p>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u>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p> <p>③ <u>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u></p> <p>② <u>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삭제</p>
<p><u>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u></p>	<p>제47조(설명의무)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p> <p>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p>	<p>제48조(손해배상책임)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li> <li>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li> <li>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li> <li>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li> <li>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ol>	<p>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삭제</p>
<p>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②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p>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② ~ ③ 삭제</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1.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p> <p>3.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p> <p>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③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p>1.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p> <p>2.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p> <p>3.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p> <p>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p>	<p>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p>

현 행 법	개 정 안
<p>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⑤ 「민법」 제756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p> <p>⑥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p>⑤ [삭제]</p> <p>⑥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p> <p>② 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li> </ol>	<p>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p> <p>② 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개정]</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3.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4.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p> <p>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3.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4.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p> <p>5.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4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p> <p>6.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p> <p>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현 행 법	개 정 안
<p>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p>
<p>제57조(투자광고) ① <u>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u></p> <p>② <u>금융투자업자(제1항 단서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u>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p>	<p>제57조(투자광고)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5.28&gt;</p> <p>1. <u>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u></p> <p>2. <u>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u></p> <p>3. <u>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u></p> <p>④ <u>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⑤ <u>투자광고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⑥ <u>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p>	<p>제59조(계약의 해제) ①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당 계약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한한다)의 해제를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는 취지의 서면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송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보수, 그 밖에 해당 계약에 관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계약의 해제에 수반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p> <p>⑤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 받은 때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p>	<p>②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당 계약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한한다)의 해제를 할 수 있다. [개정]</p> <p>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는 취지의 서면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송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보수, 그 밖에 해당 계약에 관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계약의 해제에 수반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p> <p>⑤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 받은 때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p>

현 행 법	개 정 안
<p>액 이내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p>	<p>액 이내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p>
<p>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u>제49조제3호</u>, <u>제56조</u>,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u>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u>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u>제49조제3호</u>, <u>제51조부터 제53조까지</u>,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 및 <u>제3편제1장</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u>제56조</u>,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u>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u>, 「금융소비자 보호법」 <u>제23조제6호가목</u>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p> <p>②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u>제51조부터 제53조까지</u>,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 및 「<u>금융소비자 보호법</u>」 <u>제25조제1항</u>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p>

현 행 법	개 정 안
<p>제97조(계약의 체결)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각 호의 사항</li> <li>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li> <li>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li> <li>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li> <li>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li> </ol>	<p>제97조(계약의 체결)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각 호의 사항</li> <li>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li> <li>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li> <li>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li> <li>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li> </ol>
<p>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li> <li>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과 가격</li> <li>4. 신탁의 목적</li> <li>5. 계약기간</li> <li>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li> </ol>	<p>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li> <li>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신탁재산의 종류·수량과 가격</li> <li>4. 신탁의 목적</li> <li>5. 계약기간</li> <li>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p> <p>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p> <p>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p> <p>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p> <p>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u>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u>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u>제247조</u> 및 <u>제248조</u>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p> <p>③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채산을 운</p>	<p>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u>제8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u>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u>제247조</u> 및 <u>제248조</u> 및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24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p> <p>②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p> <p>③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채산을 운</p>

현 행 법	개 정 안
<p>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 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p> <p>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p> <p>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과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 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p> <p>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p> <p>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과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법	개 정 안
<p>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및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p>	<p>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및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p>

현 행 법	개 정 안
<p>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제2항·제6항은 <u>집합투자증권</u>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u>집합투자기구</u>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u>집합투자기구</u>(이하 이 조에서 “<u>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u>”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u>집합투자증권</u>을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u>집합투자업자</u>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u>집합투자재산</u>을 운용함에 있어서 <u>집합투자기구</u>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집합투자재산</u> 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u>집합투자업자</u>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u>집합투자재산</u>을 운용함에 있어서 <u>집합투자재산</u>으로 해당 <u>집합투자기구</u>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총액은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u>집합투자재산</u>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전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방법 및</p>	<p>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제2항·제6항 및 「<u>금융소비자보호법</u>」 제24조는 <u>집합투자증권</u>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u>집합투자기구</u>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u>집합투자기구</u>(이하 이 조에서 “<u>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u>”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p> <p>②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u>집합투자증권</u>을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u>집합투자업자</u>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u>집합투자재산</u>을 운용함에 있어서 <u>집합투자기구</u>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집합투자재산</u> 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u>집합투자업자</u>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u>집합투자재산</u>을 운용함에 있어서 <u>집합투자재산</u>으로 해당 <u>집합투자기구</u>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총액은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u>집합투자재산</u>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전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방법 및</p>

현 행 법	개 정 안
<p>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p> <p>⑨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p> <p>⑨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현 행 법	개 정 안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p> <p>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p> <p>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p> <p>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p> <p>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8.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p> <p>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p> <p>②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p>

현 행 법	개 정 안
<p>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li> <li>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 명령</li> <li>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 명령</li> <li>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li> <li>5. 기관경고</li> <li>6. 기관주의</li> <li>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li> </ol>	<p>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또는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li> <li>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 명령</li> <li>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 명령</li> <li>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li> <li>5. 기관경고</li> <li>6. 기관주의</li> <li>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li> </ol>
<p>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6.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u>경우를 포함한다</u>)를 위반하여 <u>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p>	<p>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6. 삭제</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현 행 법	개 정 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3조제1항(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자</li> <li>2. 제23조제2항(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li> <li>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li> <li>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한 자</li> <li>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li> <li>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u>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li> <li>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li> <li>8.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3조제1항(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자</li> <li>2. 제23조제2항(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li> <li>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li> <li>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한 자</li> <li>5.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li> <li>6. 삭제</li> <li>7.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li> <li>8. 삭제</li> </ol>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안

현 행 법	개 정 안
<p>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22.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25의2.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p> <p>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1. 삭제</p> <p>22. 삭제</p> <p>25의2. 삭제</p> <p>26. 삭제</p>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은행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u></p> <p>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p> <p>3.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p> <p>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p> <p>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삭제</p> <p>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p> <p>3.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p> <p>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p> <p>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p>

현 행 법	개 정 안
<p>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제52조의3(광고) ①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경우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은행이 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구체적 내용, 광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2조의3(광고) 삭제</p>
<p>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p>	<p>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p>

현 행 법	개 정 안
<p>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li> <li>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li>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영업정지 기간에 그营业을 한 경우</li> <li>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li> </ol>	<p>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li> <li>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li>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영업정지 기간에 그营业을 한 경우</li> <li>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6.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li> </ol> </li> </ol>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안

현 행 법	개 정 안
	7. 「 <u>금융소비자 보호법</u> 」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 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신설]
제68조(벌칙) ② <u>제5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은행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68조(벌칙) ② 삭제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u>제52조의3제4항 중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은행</u>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삭제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보험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li> <li>3.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li> </ol>	<p>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li> <li>3.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li> <li>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li> <li>5.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러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p>	<p><u>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u></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러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p>
<p>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li> <li>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ol>	<p>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li> <li>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p> <p>3.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p> <p>3.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p> <p>5.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p> <p>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p>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p>	<p>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p>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p>

현 행 법	개 정 안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li> <li>3.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li> </ol> <p>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2.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li> <li>3.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li> <li>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li> <li>5.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li> </ol> <p>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u>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u></p> <p>② <u>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u></p>	<p>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삭제</p> <p>②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u>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p>
<p><u>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p> <p>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p>	<p>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u>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④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 및 확인 내용의 유지·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u></p> <p><u>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u></li> <li><u>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u></li> <li><u>3. 변액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u></li> <li><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u></li> </ol>	<p>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③ <u>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u></li> <li>2. <u>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u></li> <li>3. <u>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u></li> <li>4. <u>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u></li> <li>5. <u>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u></li> <li>6. <u>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li> </ol> <p>④ <u>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험회사 또는 보험</u></p>	

현 행 법	개 정 안
<p><u>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⑥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이 법이 정한 광고 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u></p>	
<p>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u></p> <p>2. <u>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u></p>	<p>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삭제</p> <p>2.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3. <u>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u></p> <p>4. <u>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u></p> <p>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p> <p>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p> <p>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p>	<p>3. 삭제</p> <p>4. 삭제</p> <p>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p> <p>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p> <p>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p>

현 행 법	개 정 안
<p>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p> <p>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p> <p>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 금지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p> <p>2.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 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p> <p>3.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p>	<p>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p> <p>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p> <p>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p> <p>② 삭제</p>
<p>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p>	<p>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p>

현 행 법	개 정 안
<p>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li> <li>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u>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u></li> <li>2. <u>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u></li> <li>3. <u>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u></li> </ol> </li> <li>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li> </ul> </li> </ol>	<p>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li> <li>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삭제</li> <li>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li> </ul> </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p>	<p>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p>
<p>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등) ① <u>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1. <u>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u></p>	<p>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등) ① 삭제</p> <p>1. 삭제</p>
<p>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u>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p>	<p>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u>사의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u></p> <p>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p>	
<p>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p> <p>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u></p> <p>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p> <p>3.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p> <p>4.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p> <p>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출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p> <p>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삭제</p> <p>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p> <p>3.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p> <p>4.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p> <p>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출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p>	<p>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p>

현 행 법	개 정 안
<p>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u>경우에는</u>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li> <li>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li> <li>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li> <li>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li> <li>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li> <li>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u>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u>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li> <li>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li> <li>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li> <li>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li> <li>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營業을 한 경우</li> <li>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p>	<p>6.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u>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u>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u>제9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u></p>	<p>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u>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u>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p> <p>1. 삭제</p>
<p>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4. <u>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위반한 경</u></p>	<p>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4.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u>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p> <p>7.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p> <p>7의2. 제1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7의3.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p> <p>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p> <p>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p> <p>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p> <p>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p> <p>14.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②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p>	<p>5.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p> <p>7.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p> <p>7의2. 제1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7의3.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p> <p>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p> <p>10.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p> <p>11.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p> <p>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p> <p>14.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②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p>



현 행 법	개 정 안
<p>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8. <u>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 위반한 경우</u></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를 위반한 자</li> <li>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li> <li>3. 제92조를 위반한 자</li> <li>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li> <li>5. 제95조를 위반한 자</li> <li>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li> <li>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u>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u>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8. <u>제95조의4를 위반한 자</u></li> <li>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11. <u>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u></li> </ol>	<p>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8. <u>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경우</u> [개정]</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를 위반한 자</li> <li>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li> <li>3. 제92조를 위반한 자</li> <li>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li> <li>5. 제95조를 위반한 자</li> <li>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li> <li>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u>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u>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li> <li>8. 삭제</li> <li>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11. <u>제99조 제3항을 위반한 자</u> [개정]</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공시한 자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공시한 자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제179조·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제179조·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li> <li>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li> <li>4. 직원의 면직 요구</li> <li>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li> <li>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li> </ol>	<p>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li> <li>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li> <li>4. 직원의 면직 요구</li> <li>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3.8.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li> <li>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li> </ol>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안

현 행 법	개 정 안
<p>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p> <p>6.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p> <p>6.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4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p> <p>7.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신설]</p> <p>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p>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li> <li>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3. 6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li> <li>3.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li> <li>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제85조(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li> <li>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3. 6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li> <li>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li> <li>3.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li> <li>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안

현 행 법	개 정 안
<p>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p> <p>6. 조합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p> <p>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p>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p> <p>6. 조합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p> <p>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p>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li> <li>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3.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li> </ol>	<p>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li> <li>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i> <li>3.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li> <li>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li> <li>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p> <p>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li> <li>2. 타인에게 <u>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u></li> <li>3. <u>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u></li> </ol> <p>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p>	<p>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p> <p>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li> <li>2. 삭제</li> <li>3. 삭제</li> </ol> <p>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p>



현 행 법	개 정 안
<p>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u></p> <p>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p> <p>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삭제</p> <p>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p> <p>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p>	<p>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p>

현 행 법	개 정 안
<p>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u>제34조부터 제43조까지</u>, <u>제48조</u>,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u>제425조까지</u>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u>제48조</u>,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u>제425조까지</u>,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제6항,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u>제64조까지</u>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p>
<p><u>제50조의9(광고) ①</u>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p>	<p>제50조의9(광고) 삭제</p>

현 행 법	개 정 안
<p><u>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u></li> <li><u>2.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u></li> <li><u>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u></li> <li><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li> </ol> <p><u>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u></li> <li><u>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u></li> <li><u>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u></li> <li><u>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u></li> </ol> <p><u>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의 주요 내용,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u></p>	

현 행 법	개 정 안
<p><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u></p>	
<p>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2.3.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li> <li>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li> <li>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0.3.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li> </ol>	<p>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2.3.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li> <li>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li> <li>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li> <li>4.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li> <li>5.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10.3.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p> <p>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p> <p>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p>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p>	<p>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p> <p>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p> <p>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p>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p> <p>6.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p>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 9 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li> <li>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li> <li>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2011.4.30&gt;</p> <p>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9 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li> <li>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li> <li>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2011.4.30&gt;</p> <p>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현 행 법	개 정 안
<p>1. 합병 또는 해산</p> <p>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p> <p>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합병 또는 해산</p> <p>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p> <p>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개정]</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중소기업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삭제 &lt;2008.2.29&gt;</p>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3.12&gt;</p> <p>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u>경우</u>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0.3.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li> <li>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li> </ol> <p>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p>	<p>제46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삭제 &lt;2008.2.29&gt;</p> <p>③ 중소기업청장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3.12&gt;</p> <p>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u>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9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u>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li> <li>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li> </ol> <p>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p>



현 행 법	개 정 안
<p>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0.3.12&gt;</p> <p>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현 행 법	개 정 안
<p>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li> <li>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li> </ol>	<p>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li> <li>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5.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p> <p>6. 투자비율이 제16조에 다른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p> <p>7. 제17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p> <p>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p> <p>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p> <p>10.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책의 요구,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p>	<p>5.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p> <p>6. 투자비율이 제16조에 다른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p> <p>7. 제17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p> <p>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p> <p>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p> <p>10.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책의 요구,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19조부터 제24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5조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p>

현 행 법	개 정 안
<p>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li> <li>2.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li> <li>3.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li> <li>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li> <li>5.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li> <li>6. 삭제 &lt;2007.8.3&gt;</li> </ol> <p>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li> <li>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li> </ol>	<p>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개정]</p> <p>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li> <li>2.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li> <li>3.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li> <li>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li> <li>5.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li> <li>6. 삭제 &lt;2007.8.3&gt;</li> </ol> <p>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li> <li>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li> </ol>

현 행 법	개 정 안
<p>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p> <p>5. 삭제 &lt;2007.8.3&gt;</p> <p>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p> <p>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p> <p>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p> <p>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p> <p>5.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p> <p>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lt;신설 2013.8.6&gt;</p>	<p>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p> <p>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p> <p>5. 삭제 &lt;2007.8.3&gt;</p> <p>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p> <p>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p> <p>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p> <p>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p> <p>5.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p> <p>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lt;신설 2013.8.6&gt;</p>

현 행 법	개 정 안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경고                      [시행일 : 2014.2.7] 제43조제1항, 제43조제5항</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경고                      [시행일 : 2014.2.7] 제43조제1항, 제43조제5항</p>
<p>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u>금융소비자 보호법</u>」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 제6항,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64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p>

현 행 법	개 정 안
<p>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p>	<p>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p> <p>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u>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부터 제24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u></p>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따른 주요 법률 개정안

현 행 법	개 정 안
<p>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p>

※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부칙에 따른 개정안